

국가회계 재정통계

2019년 2분기

Vol.19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동향

- 국가회계제도 개선
- 제25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 한·스위스 세미나 개최 예정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18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국회 제출
- 2019회계연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7~9월)

재정통계 동향

- 2018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 「국가회계·재정통계 Brief」 발간
- 2018회계연도 공기업 결산결과 분석

공익법인회계 동향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특집

- GFSY 데이터베이스의 최근 개선사항 분석
- 국가회계예규 해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 국가회계 프로젝트: 저리융자금 회계처리의 쟁점 및 개선방향

센터 동향

- 「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2019회계연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제1,2차 교육 실시
- 2019회계연도 국가회계전문교육 교재 개발 검수회의 개최
-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위탁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세미나

- 한국회계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운영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및 보고 세미나

2019년 2분기 IPSASB 정례회의 출장 후기

공지사항

- 2019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 뉴스레터 이용 안내
-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정통계

2019년 2분기

Vol.19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01. 국가회계 동향	2
① 국가회계제도 개선	2
② 제25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5
③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7
④ 한·스위스 세미나 개최 예정	12
02.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13
① 2018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국회 제출	13
② 2019회계연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7~9월)	16
03. 재정통계 동향	19
① 2018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19
② 「국가회계·재정통계 Brief」 발간	20
③ 2018회계연도 공기업 결산결과 분석	29
04. 공익법인회계 동향	41
①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41
05. 특집	55
① GFSY 데이터베이스의 최근 개선사항 분석	55
② 국가회계예규 해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65
③ 국가회계 프로젝트: 저리융자금 회계처리의 쟁점 및 개선방향	73
06. 센터 동향	79
① 『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79
②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79
③ 2019회계연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제1,2차 교육 실시	81
④ 2019회계연도 국가회계전문교육 교재 개발 검수회의 개최	82
⑤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83
⑥ 위탁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84
07. 세미나	85
① 한국회계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운영	85
②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및 보고 세미나	89
08. 2019년 2분기 IPSASB 정례회의 출장 후기	98
09. 공지사항	107
① 2019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107
② 뉴스레터 이용 안내	107
③ 홈페이지 이용 안내	107

01

국가회계 동향

1 국가회계제도 개선

가. 『재무결산 Q&A 2019』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2011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의 국가 재무결산 관련 질의회신을 종합 정리한 『재무결산 Q&A 2019』를 발간하였다. 국가 재무결산 업무는 단기간에 전문성이 요구되며 업무 강도가 높으므로 국가 재무결산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 및 자주 혼동하는 내용을 쉽게 안내하고자 『재무결산 Q&A 2019』를 발간하였다.

『재무결산 Q&A 2019』는 국가 재무결산 기간 동안 업무담당자들이 실제 접수한 질문들을 회계처리(370건), 디브레인 업무처리(88건), 재무제표 작성(25건) 등 업무 유형에 따라 나누고, 총 483건의 Q&A로 작성하였다. 『재무결산 Q&A 2019』는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디브레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3개의 챕터로 구성되었다.

-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의 규정의 해석 및 실제 회계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응답을 국가회계편람의 지침 순서대로 배열하고, 답변 내용 하단에 관련 회계처리지침 근거를 수록하여 사용자가 해당 Q&A를 활용하기 쉽게 하였다.
- **디브레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는 수정전 시산표 마감, 내부거래 제거 등 재무결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브레인 관련 질의응답을 수록하였으며 디브레인 업무처리 순서대로 정리하여 찾기 쉽도록 하였다.
-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는 결산개요, 주석, 필수 보충정보 등 결산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주요 질의 및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결산보고서 작성 시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재무결산 Q&A 2016』 이후 발간된 『재무결산 Q&A 2019』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사항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 접수된 유선 및 문서 질의회신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 쟁점이 존재하여 개정 검토가 필요한 사항, 단순 계정과목 안내와 중복질의로 유용성이 낮은 사항, 질의 효력이 경과되었거나 현재 활용도가 줄어든 사항 등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 기존 질의응답 내용을 유사 항목끼리 재분류하고 관련 규정의 참고 형식을 통일하는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일관성을 제고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재무결산 Q&A 2019』 주요 변경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발상황 규정 전면개정에 따라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관련 질의응답 수정(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 내부거래 상계 제외 항목 관련 질의 추가(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 비배분수익·비용 정의 및 원가항목 구분 개정 반영(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 신종자본증권, 투자일임계약의 지분증권 계정분류 및 내재파생상품 미분리 규정 관련 질의 추가(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질의회신 (129건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설정한 소송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소송충당부채전입액'으로 처리) • 매립면허권 현물출자 시 회계처리 및 무형자산 인식 여부 • 취득부대비용인 취득세 감면된 경우 회계처리 등
일부 삭제 (32건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검토사항으로 쟁점이 존재하는 질의 (변동이자율 조건의 용자금 회계처리, 사용수익권 평가 등) • 단순 계정과목 안내와 중복질의로 유용성이 낮은 질의 (MMF 계정과목 분류 등 단순 안내사항 및 임차자산 리모델링 관련 다수 중복 질의) • 질의 효력이 경과되었거나 현재 활용도가 낮아진 질의 (감가상각 개시시점 회계처리, 치안유지자산 등 과거 계정과목 신설 관련 질의 등)

『재무결산 Q&A 2019』는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2019년 하반기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및 디브레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재무결산 Q&A 2019』는 국가 재무결산 업무담당자들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실제 국가 재무결산 업무 수행 중 업무담당자들의 의문점과 쟁점이 되는 부분을 최대한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발간된 『재무결산 Q&A 2019』는 국가 재무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재무결산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19』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6년도에 개최한 ‘국가회계제도 도입 5주년 세미나’를 기념하여 『알기 쉬운 국가회계』를 최초 발간한 이후 세부사항을 업데이트하여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알기 쉬운 국가회계』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다지기, 국가회계제도 이해하기, 국가 재무제표 들여다보기,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기타 특수한 회계처리 등 다섯 개의 파트로 구분하여 국가회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별첨에는 2018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와 국가회계 실체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알기 쉬운 국가회계』는 최신 재무정보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국가회계기준의 제·개정 과정과 질의회신 절차를 보완하였다. 또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에 대한 소개 및 발생주의 도입 국가들의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사례도 추가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알기 쉬운 국가회계』가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국가회계 기초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신 국가 재무정보를 반영한 책자는 2019년 하반기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 제25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5월 3일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제25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가회계자문위원회는 국가회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센터 내의 자문기구이며,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8명 및 해외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회계 자문위원회 위원 현황

- 정부위원(1): 박성동(기획재정부 국고국장)
- 민간위원(8):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동욱(제주대학교 교수), 이아영(강원대학교 교수), 최연식(경희대학교 교수), 주인기(국제회계사연맹 회장), 심태섭(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윤영진(계명대학교 교수), 배원기(홍익대학교 교수)
- 해외위원(3): Ian Ball(공공부문화계사협회 국제부문 회장), Andreas Bergmann(취리히대학교 교수), Delphine Moretti(OECD 공공예산정책국)

제25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는 정도진 위원장의 주재로 정부위원 1인과 민간위원 6인이 참여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재무결산」 및 「2019년도 국가회계 사업계획」 등 2개 안건을 보고받고, 「IPSAS 공개초안(ED) 67 의견제출(안)」 및 「저리용자 회계처리 개선 프로젝트」 등 2개 안건을 논의하였다.

가. (안건 1) 2018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

(안건 2) 2019년도 국가회계 사업계획

2018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로 추진 경과, 주요 내용 및 주요 변동 원인 등이 보고되었으며, 2019년도 국가회계사업계획으로 국가회계팀의 국가회계기준 등 재·개정 계획, 국가회계제도 프로젝트, 국제협력업무 등과 결산교육팀의 결산업무 및 교육업무 계획을 보고하였다.

나. (안건 3) 「IPSAS 공개초안(ED) 67」 의견제출(안) 논의

IPSASB의 「공개초안(ED) 67(집합적·개별적 서비스, 응급구호)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준비한 제출의견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반영하여 5월 31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로 의견제출을 완료하였다.

「IPSAS 공개초안 67」의 자세한 내용은 '1. 국가회계 동향 - ②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안건 4) 국가회계 프로젝트: 저리용자 회계처리 개선

저리용자 회계처리 개선 프로젝트는 개정지침의 적용 범위, 용자보조효과의 구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해당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용자회계처리지침」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저리용자 회계처리 개선의 자세한 내용은 '6. 특집 - ③ 국가회계프로젝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문위원회(5.3.),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3층 회의실〉

3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가. IPSASB, 2019년 6월 정례회의 개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는 2019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캐나다 토론토에서 2019년 2분기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IPSASB에서 추진 중인 '수익', '비교환비용', '리스', '유산', '사회기반시설' 등의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 안건과 의사결정 결과 등은 IPSASB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별 주요 논의사항을 요약한 결과는 "8. 2019년 2분기 IPSASB 정례회의 출장 후기"에 수록되어 있다.

나. IPSASB의 「IPSAS 공개초안(ED) 67」에 대한 의견서 제출

IPSASB는 「공개초안 67, 집합적·개별적 서비스 및 응급구호 (IPSAS 19 개정안)」을 2019년 1월 31일에 발행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또한 IPSAS 제·개정 시 의무적으로 자문보고서(CP) 및 공개초안(ED) 공개를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국가회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개초안 67에 대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31일에 제출하였다.

IPSASB는 공공부문의 중요한 거래인 '비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채에 관한 회계처리 지침들을 개발하고 있다. 공개초안 67은 IPSAS 19,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반영할 비교환 거래 중 집합적 서비스(collective services), 개별적 서비스(individual services), 응급구호(emergency relief)의 정의 및 회계처리를 제안하고 있다.

센터는 요청된 총 네 개의 SMC(Specific Matters for Comment)에 대해, 응급구호 회계처리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에 동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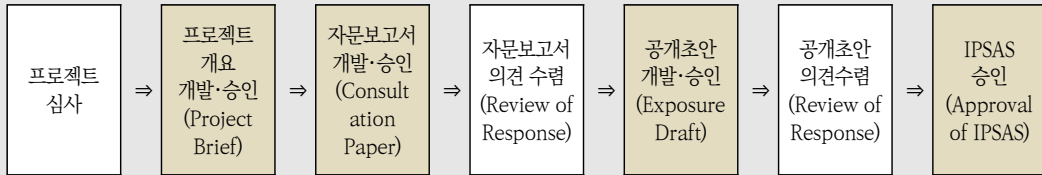
1) <http://www.ifac.org/news-events/2019-07/ipsasb-enews-july-2019>

구분	주요 내용		센터의견
smc 1	용어의 정의	ED 67에서 제안한 집합적 서비스와 개별적 서비스 용어의 정의에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용어의 정의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동의 (응급구호 정의 추가 제안)
smc 2	집합적 서비스와 총당부채	집합적 서비스에 대해 총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상황에서 총당부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동의 (총당부채 미인식 근거보완 제안)
smc 3	개별적 서비스와 총당부채	개별적 서비스에 대해 총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상황에서 총당부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동의 (총당부채 미인식 근거보완 제안)
smc 4	응급구호의 회계처리	ED 67에서 제안한 응급구호 회계처리 방법에 동의하는지? 응급구호는 어떻게 회계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동의하지 않음 (한국사례 및 IPSAS 42 상충)

「IPSASB 공개초안 67」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회계기준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였다. 현행 국가회계의 「비용 회계처리지침」상 비교환거래는 일반적으로 국가회계실체가 의무이행을 위한 지출을 승인하고 거래 상대방이 수급 조건을 충족하며,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미지급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당부채를 인식할 여지가 없다. 반면,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에서는 비교환거래를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비교환거래에 대해서도 총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과한 해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총당부채 설정 대상에 비교환거래를 제외하는 방안을 연차개선 과제에 포함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IPSASB는 센터의견을 포함한 타 기관들이 제출한 답변을 IPSASB 홈페이지(<http://www.ifac.org/publications-resources/exposure-draft-67-collective-and-individual-services-and-emergency-relief>)에 게재할 예정이다.

참고로, IPSASB는 IPSAS를 승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절차 중 하나로 체계적인 의견 형성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센터는 2016년도부터 국가회계기준 제정기구로서 국가회계기준의 연구·발전 및 국제협력을 위해 이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해왔다.

NO	제출일	안건 내용
1	2016.12.31.	「Consultation Paper」 Public Sector Financial Instruments
2	2017.6.23.	「Consultation Paper」 Financial Reporting for Heritage in the Public Sector
3	2017.12.29.	「Exposure Draft 62」 Financial Instruments
4	2018.1.15.	「Consultation Paper」 Accounting for Revenue and Non Exchange Expenses
5	2018.3.30.	「Exposure Draft 63」 Social Benefits
6	2018.4.10.	「Consultation Paper」 Draft Chapter 3
7	2018.6.29.	「Exposure Draft 64」 Leases
8	2018.7.6.	「Consultation Paper」 and 「Exposure Draft」 Public Sector Measurement
9	2018.7.6.	(기타) IPSASB Strategy and Work Plan 2019-2023 Consultation
10	2018.9.13.	(기타) Survey on Convergence vs Alignment by KIPF
11	2019.5.30.	「Exposure Draft 67」 Collective and Individual Services and Emergency Relief
12	2019.9. 예정	「Consultation Paper」 Measurement

다. 제3차 공공부문기준제정자포럼 개최

IPSASB는 2019년 6월 24일(월)부터 6월 25(화)일까지 양일간 캐나다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Niagara-on-the-Lake)에서 “Designing the Next Stage of the Global Accrual Journey”라는 주제로 공공부문기준제정자포럼(Public Sector Standard Setters Forum, 이하, ‘포럼’)을 개최하였다. 2016년(미국), 2017년(스위스)에 이어 3회를 맞이한 이 포럼에는 각국의 기준제정자 70여명이 참석하여 다음의 세부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Theme A & B **공공부문 특유 이슈에 대한 기준 제정 및 IFRS와의 정합성 유지**
(현재 IPSASB 프로젝트에 대한 최신 의견 및 단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 재조명)
- Theme C **재무제표 이용자의 더 폭넓은 필요를 충족하는 지침 개발**
(폭넓은 재무보고를 위한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시도)
- Theme D **IPSAS 도입 및 이행 추진**
(공공부문 재무회계 책임성지표, 이행 관련 진행경과 및 경험 공유, IPSAS 도입의 성공 요소에 대한 지역적 논의)
- Theme E **PFM 강화를 위해 발생주의의 강점 홍보**

또한, IPSASB는 2019-2023 전략 및 과업계획에서 동의한 바와 같이 특정 주제(차등보고, 할인율, 공공부문에서 재무제표의 표시, 조세지출)에 대한 심도 깊은 리서치를 위해 Research Group(이하, ‘리서치그룹’)을 발주하였는데, 이번 포럼에서 리서치그룹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3차 공공부문기준제정자포럼(6.24~25.),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 퀸스랜딩(캐나다)〉

라. IPSASB, 「자문보고서(CP), 측정」에 관한 의견제출 요청

IPSASB는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 CP), 측정」을 2019년 4월 30일에 발표하였다. 동 자문보고서의 목적은 IPSAS의 측정 요건과 개념체계의 측정 요건 간의 정합성을 더 높이는 데 있다.

IPSASB는 ‘측정’ 프로젝트를 통해 최초 인식, 사후 측정, 측정 관련 공시사항과 관련하여 수정된 요건을 포함한 개정된 기준서를 발행하고, 역사적 원가, 이행원가, 공정가치 등의 적용 및 이러한 측정기준이 사용될 환경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거래원가와 차입원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번 자문보고서에서 IPSASB는 예비견해(preliminary views)를 통해 식별한 분야에 대해 개념에 기초한 논의를 하고, IPSAS(안)이 어떤 형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예시적 공개초안(Illustrative Exposure Draft)’을 제공하는 새로운 자문 접근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문보고서, 측정」에 대한 의견은 2019년 9월 30일까지 IPSASB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고, 타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제출한 답변은 2019년 9월 30일 이후에 IPSASB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센터는 「자문보고서, 측정」에 대한 검토 및 국가회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다.

4 한·스위스 세미나 개최 예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2019년 10월 1일(화)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공재정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회계의 역할(가칭)」이라는 주제로 「한·스위스 발생주의 세미나(이하, '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동 세미나는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국제자문위원인 Andreas Bergmann 교수(스위스 응용과학대학)의 요청에 따라, 2019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Zurich meets Seoul(취리히, 서울을 만나다)” 행사와 연계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과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발표 세션과 좌담회 세션으로 운영되며, 발표 세션에서는 스위스의 Andreas Bergmann 교수, Reto Steiner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고, 한국의 조세연과 지방재정통계센터가 정부부문의 발생주의 회계제도와 관련하여 각 기관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할 것이다. 좌담회 세션에서는 현재 IFAC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과 스위스는 통합된 공공재무관리(integrated public financial management)의 선두주자이며, 두 국가 모두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보고와 GFSM 2001에 따른 정부재정통계를 통합하는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양국 모두 통합 ERP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세미나의 세부 주제는 논의 중에 있으나, 양국은 이러한 유사점과 그간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각국의 관점에서 공공부문화계의 선진화, 지속가능한 재무관리, 재무 지배구조, 시스템 계획, 정부재정통계 등의 주제에 대한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센터는 동 세미나를 통해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하여 발생주의 회계정보, 재정관리시스템 등의 유용성을 양국의 사례를 통해 점검하고, 국제협력 확대 및 국가회계의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리서치 협업을 포함한 ZHAW와 조세연 간의 협력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취리히, 서울을 만나다 - 두 도시 축제(Zürich meets Seoul - A Festival of Two Cities)는 1주일간 서울 전역의 다른 장소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된다.

“Zurich meets Seoul(취리히, 서울을 만나다)”은 Zürich meets Your City라는 이벤트 시리즈의 일부이다. 뉴욕(2014), 런던(2016), 홍콩(2017), 샌프란시스코(2018)에서 동일한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02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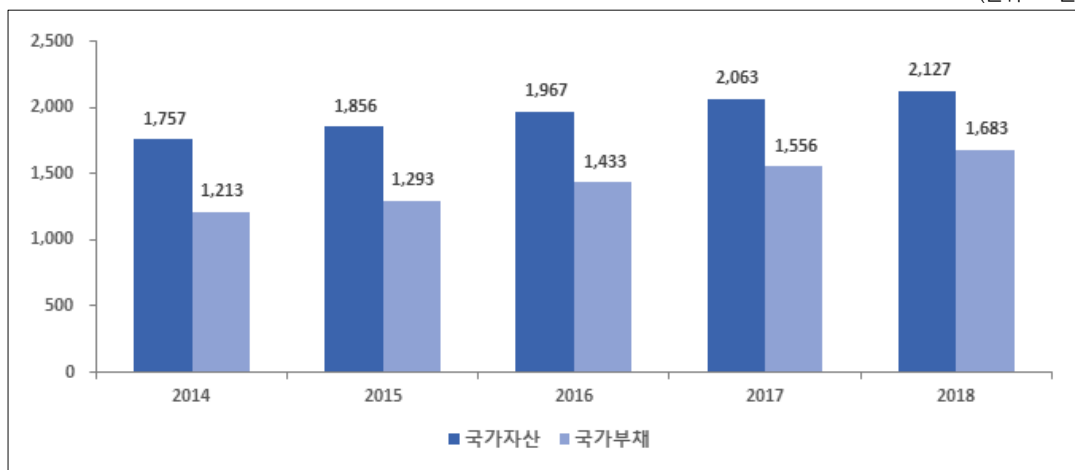
1 2018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국회 제출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를 수정 반영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같은 달 10일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며, 감사원은 결산검사 수행결과를 5월 20일에 기획재정부에 송부하였다.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국가 자산은 2.9조원, 부채는 0.7조원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126.6조원, 부채는 1,683.4조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43.2조원으로 집계되었다. 기금 여유자금 증가 등으로 자산이 전년 대비 64.1조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 증가와 할인율 하락 등에 기인한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등으로 부채는 전년 대비 127.6조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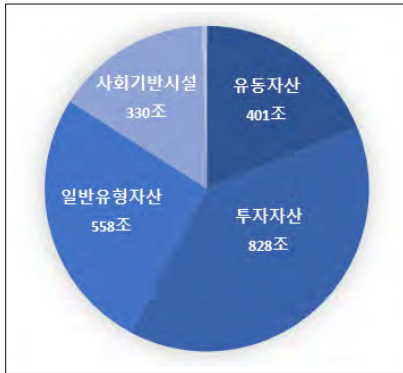
〈연도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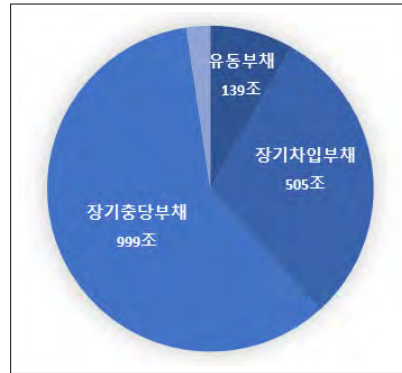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2014~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4~2018 각연도

〈국가자산의 구성〉



〈국가부채의 구성〉



출처: 기획재정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8

2018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126.6조원으로 전년 대비 64.1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자산 6.8조원, 투자자산 41.5조원, 일반유형자산 10.9조원, 사회기반시설 4.9조원, 무형자산 △0.2조원, 기타비유동자산 0.2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8년 말 현재 자산 항목 중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전체 자산의 38.9%와 26.2%를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유동자산이 18.9%이다.

2018년 말 현재 자산 세부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단기투자증권 207.2조원, 현금및현금성자산 51.7조원, 단기금융상품 54.6조원 등 총 401.2조원이며,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569.8조원, 장기대여금 147.7조원 등 총 828.0조원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341.3조원, 건물 65.7조원 등 총 557.6조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191.4조원, 철도 40.4조원 등 총 329.5조원이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1.2조원 등 총 1.4조원이고, 기타비유동자산은 장기미수채권 5.7조원 등 총 9.0조원이다.

2018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1,683.4조원으로 전년 대비 127.6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충당부채 96.4조원, 장기차입부채 26.6조원, 기타비유동부채 5.5조원, 유동부채 △0.9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8년 말 현재 부채 항목 중 장기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9.3%, 장기차입부채는 30.3%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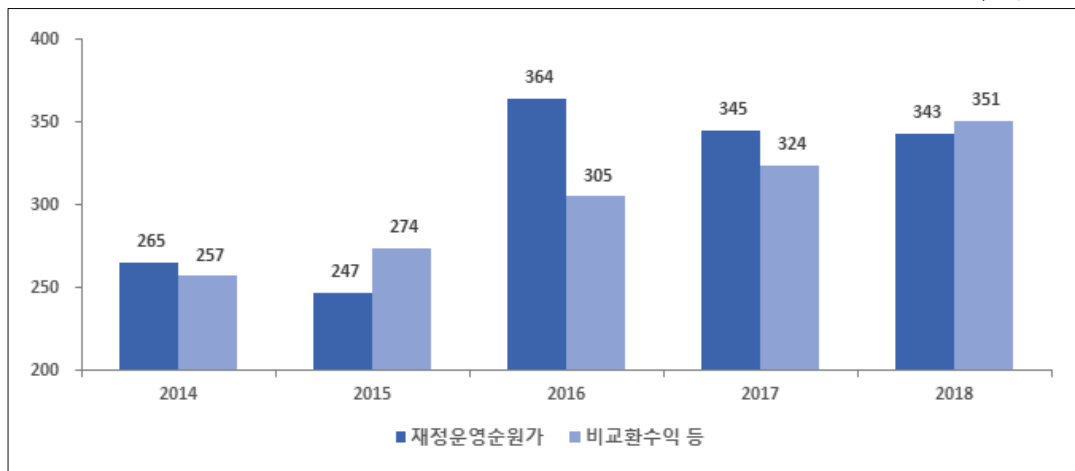
2018년 말 현재 부채의 세부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69.0조원, 유동성장기차입부채 50.0조원 등 총 139.3조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국채(자기국채 차감) 490.0조원, 공채

(자기공채 차감) 11.7조원 등 총 505.0조원이다. 장기충당부채 998.6조원은 연금충당부채 939.9조원, 퇴직수당충당부채 51.1조원, 기타 7.6조원(보증충당부채 4.5조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비유동부채 40.5조원은 장기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27.3조원, 장기미지급금 13.2조원이다.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의 재정운영순원가는 343.3조원이며, 비교환수익 등 351.1조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7.8조원이다. 이는 재정운영에 따른 수익이 제 비용을 초과하였음을 나타낸다. 재정운영순원가는 전년 대비 1.9조원이 감소하였고, 비교환수익 등은 국세수익의 증가 등으로 27.0조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도 21.1조원에서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28.9조원 감소하였다.

〈연도별 재정운영 순원가와 비교환수익〉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2014~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4~2018 각연도

이번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 2019회계연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7~9월)

「2019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지난 6월 19일 서울지역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2차에 걸쳐 전국 8개 지역(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원주, 세종)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본 교육은 기획재정부 주최로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다. 특히, 작년부터는 안정적인 교육 관리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의 3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국가회계이론’ 과정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등의 과목을 통해 회계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회계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업무 유형별 디브레인(dBrain) 오류사례 및 해결방법 등의 과목을 통해 회계 담당 공무원이 회계 관련 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실무’ 과정은 재무결산 담당자가 2019회계연도 재무결산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결산업무 진행 순서대로 세부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교육 커리큘럼〉

과정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국가 회계 이론	1일차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5.0	1. 회계원리의 이해 2. 재무제표의 이해 3.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이해 4. 회계순환과정의 이해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2.0	1. 국가 재정운용체계 2. 국가회계의 의의와 구분 3. 국가회계법령의 개요 4. 국가회계기준의 체계와 주요 내용 5.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6.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기본사례
	2일차	국가재무정보 기초사례 연습	0.5	1. 국가재무정보 이해를 위한 기초사례 2. 사례를 기초로 한 국가의 예산, 추경, 재정, 프로그램, 회계와의 관계
		세입세출 거래와 복식부기	2.0	1. 세입세출거래의 복식부기 변환 2. 발생원인에 따른 세입세출거래의 3가지 유형 3. 세입세출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 4. 수익·원가·자산·부채와 국가회계의 특성
		결산조정과 발생주의	2.0	1. 결산조정: 발생주의 재무정보로의 전환 2. 자산·부채 평가 3. 기간손익 조정 4. 비현금거래와 원가의 재분류
		종합사례 연습	2.5	1. 종합사례의 기본 가정 2.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현금흐름과 회계기록 3. 현금주의에 따른 복식부기 기록방식 및 회계처리 4. (현금주의) 수정전 시산표와 재무제표 5. 발생주의 항목의 이해 및 회계처리 6. (발생주의) 수정후 시산표 및 재무제표
국가 회계 실무	1일	업무 유형별 dBrain 오류사례 및 해결방안	3.5	1. 유형별 dBrain 업무 처리 유의사항 - 수입·지출 관련 유의사항(1, 3~5, 7~10차 교육) - 국유재산, 물품 관련 유의사항(2, 6차 교육)
		재무제표를 통해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3.5	1.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하는 이유 2. 재정운영표 살펴보기 3. 재정상태표 살펴보기 4. 주식 등 기타 정보 살펴보기

과정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재무 결산 실무	1일차	회계연도 결산 개요	1.0	1. 기준 개정사항, 조직개편 관련 사항 등
		국가재무결산의 이해	2.5	1. 국가재무결산 개요 및 절차 2. 세입세출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비교 3.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 4. 국가재무제표의 이해
		수정전 시산표 마감 전 유의사항	3.5	1. 재무장부 조회 및 점검방법 2. 수정전 시산표 마감 및 유의사항
	2일차	내부거래실무	1.5	1. 내부거래의 의의 2. 내부거래 제거방식 3. 결산담당자 유의사항 및 처리방법
		결산조정분개	2.0	1. 국가회계 결산조정분개의 이해 2. 결산조정분개의 유형과 결산조정분개 사례 3. 국가회계 결산보고서 작성(결산조정분개)
		결산보고서 작성	3.5	1. 결산작성지침 개요 2. 결산보고서 생성방법 및 유의사항 3. 총잉여금·재정운영 결과 조정표, 자산부채조정명세서

현재 6월 서울(1차)과 대전(2차) 과정은 신청자 수가 교육인원을 초과하였고, 많은 교육생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국가회계 전문교육 7~9월까지의 교육과정(3~9회차)은 국가회계교육 포털(<http://edu.kipf.re.kr>)에서 접수 중이다.

〈교육 개요〉

교육기간	2019년 6~11월(총 12회)
교육지역	서울·대전·부산·대구·광주·제주·원주·세종
대상자	국가회계 관련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인원	각 회차당 100명(대구·제주 지역은 80명)
교육과정	국가회계이론 과정(2일간, 10회) 국가회계실무 과정(1일간, 10회) 재무결산실무 과정(2일간, 2회)
수강신청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edu.kipf.re.kr)

03

재정통계 동향

1 2018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1) 「2018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 설명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기획재정부는 2019년 5월 21일(화)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일반정부 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 작성 대상인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일반정부·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 설명회」는 『GFSM(재정통계편람) 2001』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수익, 비용, 자산, 부채 등) 및 PSDS(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각 기관의 재정통계 작성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윤정식 심의관의 소개 및 인사말로 시작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운진 팀장의 재정통계의 개요 및 산출결과에 대한 설명과 유귀운 회계사의 재정통계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작성 관련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우리나라 재정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된 『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를 추가 자료로 배포하였다.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 설명회(5.2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2) 2018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공공기관으로부터 취합된 재정통계는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통계와 합산하여 일반정부 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로 산출된다. 재정통계는 2019년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국제기구인 IMF와 OECD에도 제출될 예정이다.

2 「국가회계·재정통계 Brief」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7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GFS) 분석에 대한 「국가회계·재정통계 Brief」를 발간하여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일반정부 재정통계는 '2017 회계연도 한국통합 재정수지'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보고서 및 보도자료는 내용이 많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Brief에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기존 내용에 추가 분석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I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이 보고서는 2019년 3월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팀장
 유명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특수전문직

우리나라는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발생주의 통계작성기준(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01: 이하 GFSM 2001)에 따라 정부의 재정통계를 산출하여 IMF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다양한 재정지표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GFS의 포괄범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이며, 이 보고서에서는 일반정부 재정통계 결과를 분석하였다.

2017회계연도 기준의 재정수지는 47조원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총자산 및 부채는 각각 3,484조원과 737조원으로 순자산은 2,747조원이다.

GFS는 기초 저량에 기중 유량을 반영하여 기말 저량을 도출하는 체계이므로 모든 경제적 거래가 재정통계에 반영되어 재정정책 효과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가. GFS 재정지표

GFSM에 따라 산출되는 통계 보고서의 재정정보를 통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재정지표들을 도출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재정지표들은 다음과 같음

유형	2017년 규모 (GDP 대비)	산출식	의미	비고
순운영수지	93조 (5.4%)	총수익-총비용	정부운영의 지속가능성	정부운영표
재정수지 ¹⁾	47조 (2.7%)	총수익-총지출	금융자원의 제공 여부	정부운영표
순자산	2,747조 (158.7%)	자산-부채	재정활동의 지속가능성	재정상태표
순금융자산	659조 (38.1%)	총금융자산-부채	유동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재정상태표
확정부채	735조 (42.5%)	총부채-주식 및 기타지분과 파생상품부채	부채의 건전성 (PSDS 기준)	재정상태표

주: GFSM 2001에서는 순융자(Net lending)·순차입(Net borrowing)의 용어를 사용함
출처: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

정부운영표상의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의 금액과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음

(단위: 조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익(A)	484	1.0	505	4.2	535	5.9	568	6.3	610	7.4
총지출(B=C+D)	463	0.0	484	4.5	515	6.4	525	2.0	563	7.2
총비용(C)	421	0.5	443	5.2	470	6.2	483	2.7	517	7.0
비금융자산의 순취득(D)	42	△5.1	41	△2.1	45	8.7	42	△5.8	46	8.5
순운영수지(A-C)	63	4.0	62	△2.0	64	3.7	85	32.2	93	9.6
재정수지(A-B)	21	28.6	21	△1.7	20	△6.2	43	119.8	47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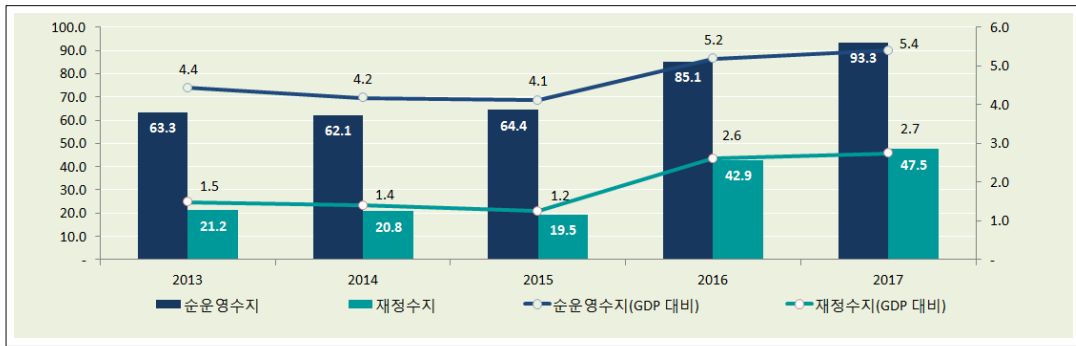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GFSM에 따라 산출되는 주요 재정수지 관련 지표의 추세를 살펴보면, 재정수지는 2014회계연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회계연도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회계연도에도 2016회계연도에 이어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음. 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규모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중앙정부의 법인세 7.3조원 증가 및 지방정부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등에 따른 취득세 수익이 전기 대비 1.7조원 증가하는 등 국세수입 증가 등에 따라 재정수지가 개선됨에 따름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임

〈재정수지 5개년 추세〉

(단위: 조원, GDP 대비 %)



출처: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자산과 부채의 추세

재정상태표상 자산·부채의 금액과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음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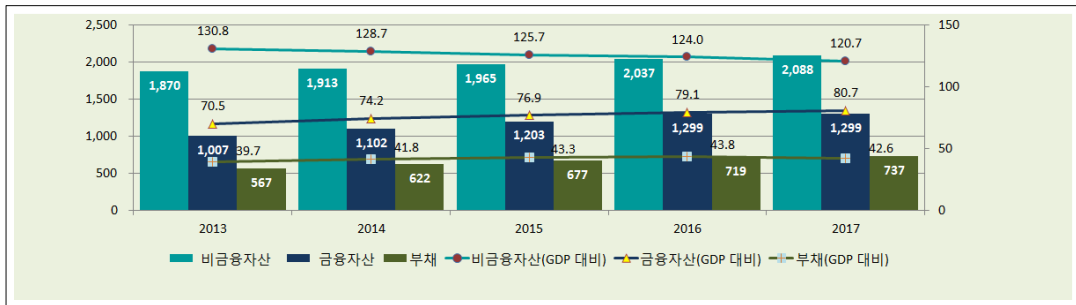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순자산	2,310	2.6	2,393	3.6	2,491	4.1	2,617	5.0	2,747	5.0
자산	2,877	4.3	3,015	4.8	3,169	5.1	3,336	5.3	3,484	4.4
비금융자산	1,870	2.3	1,913	2.3	1,965	2.7	2,037	3.6	2,088	2.5
금융자산	1,007	8.4	1,102	9.5	1,203	9.2	1,299	8.0	1,396	7.5
부채	567	12.1	622	9.6	677	8.9	719	6.1	737	2.6

출처: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재정상태표상 금융자산의 GDP 대비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비금융자산의 GDP 대비 규모는 2013회계연도부터 감소로 전환되었고 부채의 GDP 대비 규모 또한 2017회계연도에 감소로 전환되었음

〈자산과 부채의 5개년 추세〉

(단위: 조원,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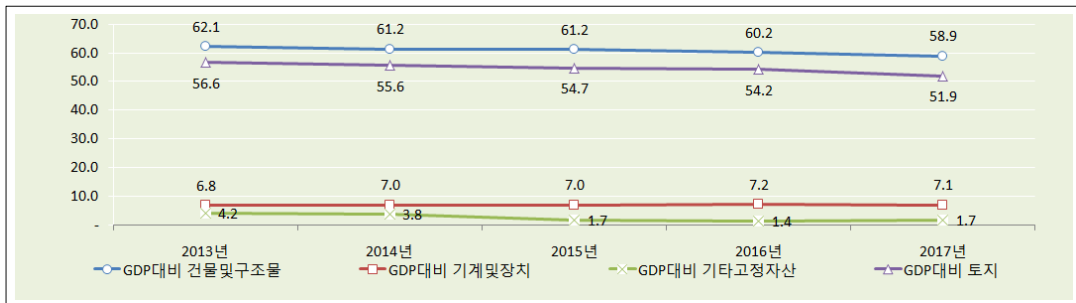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비금융자산의 세부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건물 및 구조물과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GDP 대비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축소 등 비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비금융자산의 5개년 추세〉

(단위: GDP 대비 %)



출처: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라. 자산과 부채의 변동 원인

2017회계연도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경우 거래(취득-처분-고정자산소비)로 46조원이 증가하였으며, 평가로 인한 보유손익 2조원, 누락자산 등재 등 기타 내용 변화로 3조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51조원이 증가하였음

금융자산은 주로 부채 조달 및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에 따른 거래로 72조원, 평가로 인한 보유손익 28조원, 기타 내용 변화 △3조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97조원이 증가하였음. 부채는 거래(차입 및 상환 등)로 25조원, 평가로 인한 보유손익 △2조원, 기타 내용 변화 △4조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19조원이 증가하였음

즉, GFS 체계에 따르면, 정부 정책으로 인한 모든 경제적 거래가 재정통계 보고서에 집계되므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음

〈자산과 부채의 통합변동 명세〉

(단위: 조원)

구분	2017 기초	변동 내역(flow)			2017년 기말
		거래	보유손익	기타 내용 변화	
자산	3,336	118	30	0	3,484
비금융자산	2,037	46	2	3	2,088
금융자산	1,299	72	28	△3	1,396
부채	719	25	△2	△4	737

(단위: 조원)

구분	2016년 기초	변동 내역(flow)			2016년 기말
		거래	보유손익	기타 내용 변화	
자산	3,169	122	37	9	3,336
비금융자산	1,965	42	14	15	2,037
금융자산	1,203	79	23	△7	1,299
부채	677	37	3	2	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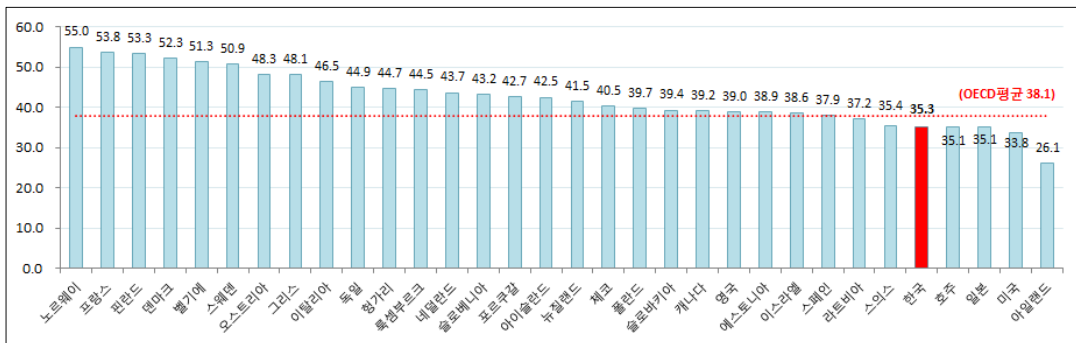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마. 국제 비교

일반정부의 총수입을 OECD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17년 우리나라 총수입은 GDP 대비 35.3%로 OECD 평균인 38.1%에 비해 낮은 편임

〈2017년 일반정부 총수입의 국제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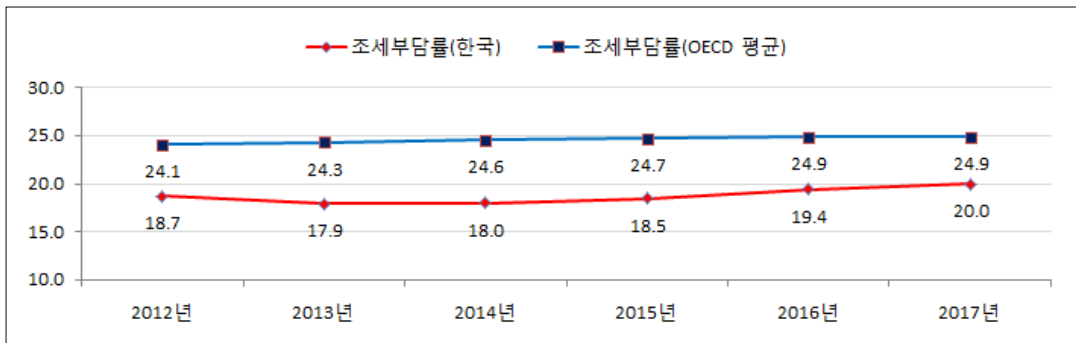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수입

2017회계연도 일반정부 조세부담률(조세/GDP)은 20.0%로 전기 대비 0.6%p 증가하였음. 조세 부담률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8~20%대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4.9%에 비해 낮은 편임

〈조세부담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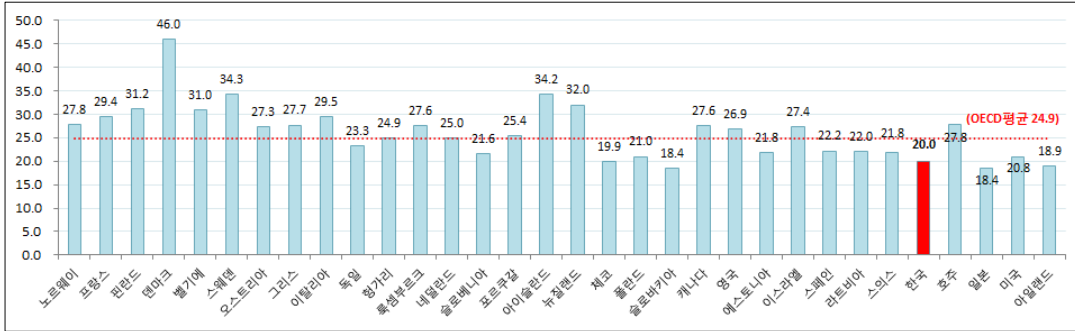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8, OECD 2017년 조세부담률은 2016년 정보를 사용함

〈2017년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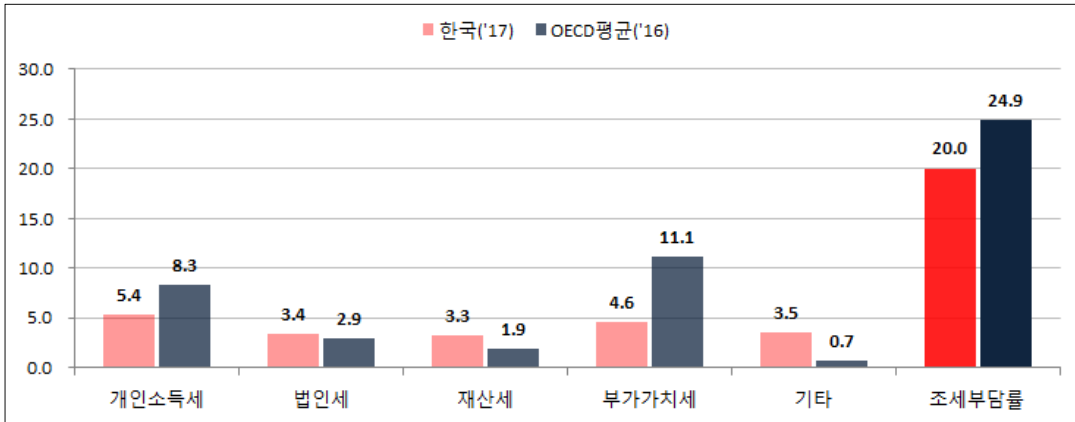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8, OECD 2017년 조세부담률은 2016년 정보를 사용함

2017회계연도 조세를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OECD 평균보다 낮으나, 재산세, 법인세의 경우 소폭 크게 나타남

〈2017회계연도 조세부담률 항목별 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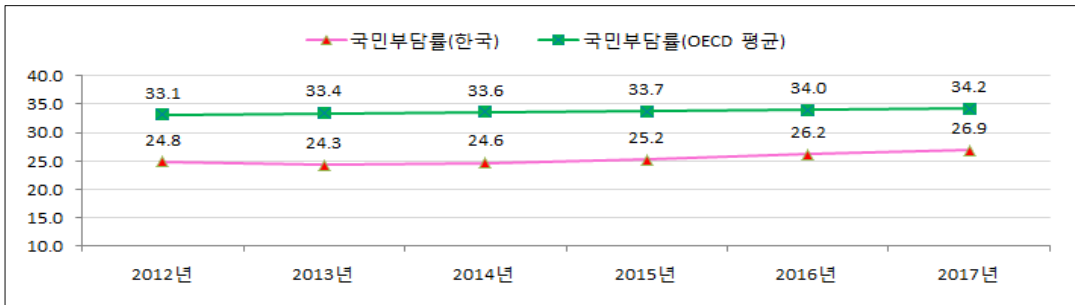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2017년 자료는 공시되지 않아 2016년 OECD 평균 사용

2017회계연도 일반정부 국민부담률(조세수입+사회보험료)은 26.9%로 전기(26.2%) 대비 0.7%p 증가하였음. 국민부담률은 조세에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34.2%)에 비해 낮은 수준임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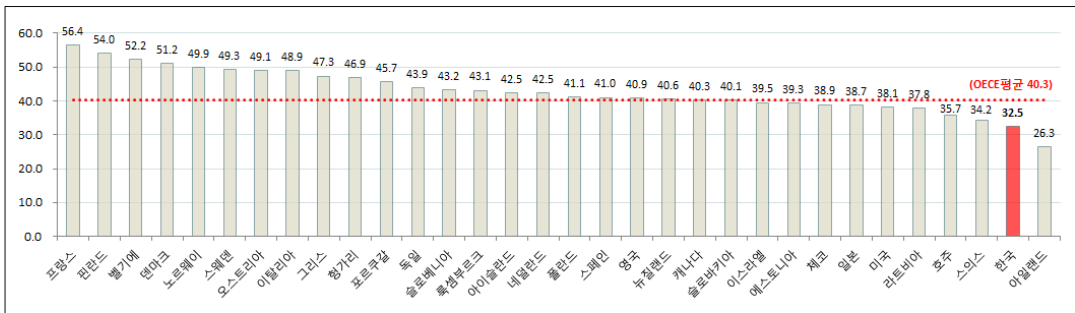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8, 2017년은 잠정치

일반정부 총지출의 경우 2017년 우리나라 총지출은 GDP 대비 32.5%로 OECD 평균인 40.3%에 비해 낮은 편임

〈2017년 일반정부 총지출의 국제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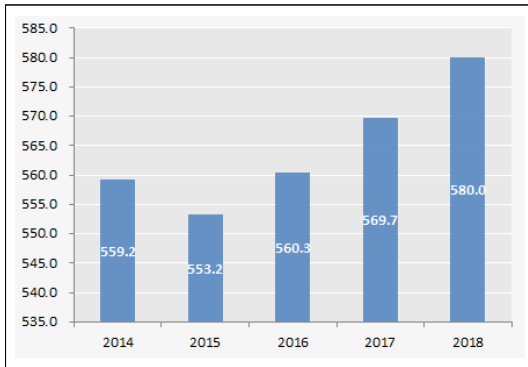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지출

가. 공기업 자산과 부채

공기업 자산 및 부채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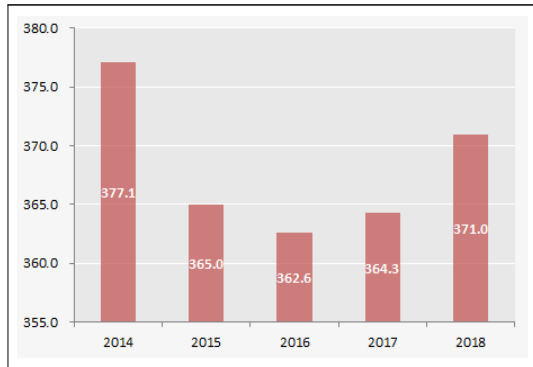
〈공기업 자산〉

(단위: 조원)



〈공기업 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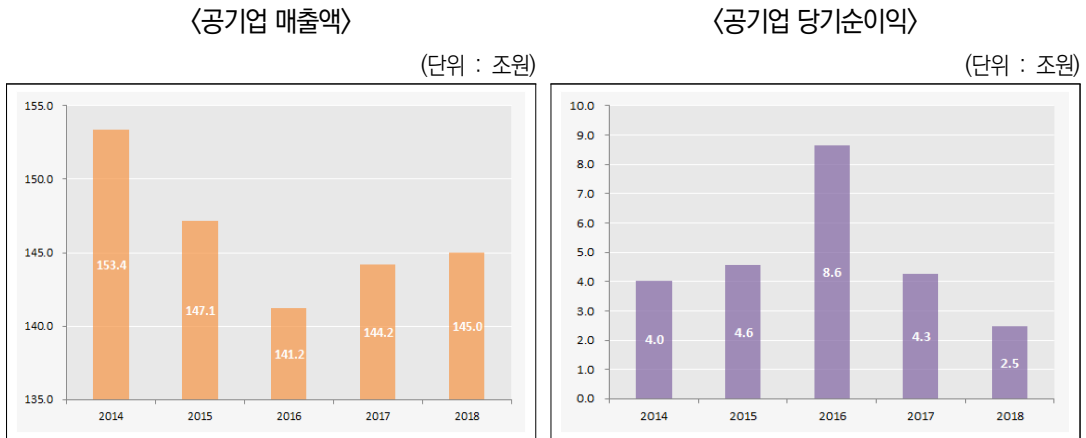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공기업의 자산은 2015년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에 대한 자산손상차손 인식, 한국가스공사의 가스판매 저조로 인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감소,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매각,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자산손상차손 등으로 5개년 중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2015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설비투자 등으로 공기업의 자산이 증가 추세이다.

공기업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 최저치를 나타냈으나 2018년의 경우 투자비 조달 및 운전자본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8조원 증가하였다.

나. 공기업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공기업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2018년도 공기업 매출액은 한국가스공사의 판매물량 증가 및 판매단가 상승과 한국석유공사의 원유가스 판매량 증가 및 판매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8,378억원 증가하였다.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까지는 당기순이익이 증가 추세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이며 2018년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연료비 상승 및 사업 손상 등의 영향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토지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조 8,013억원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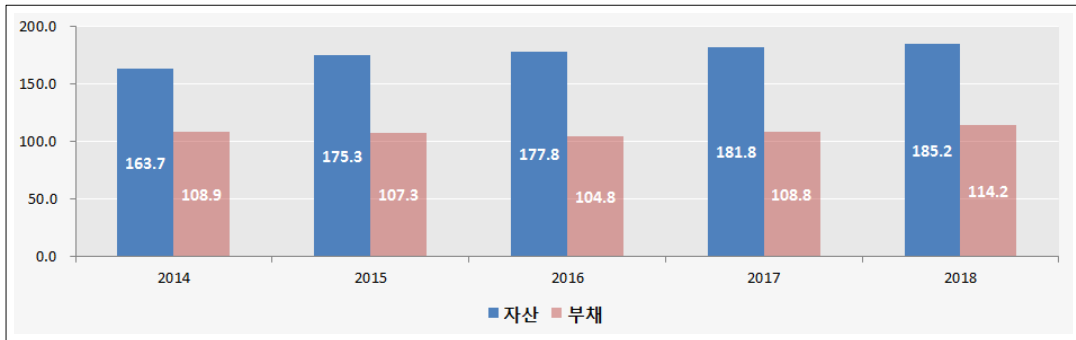
다. 주요 공기업 증감 분석

1)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는 2018회계연도 공기업 총자산 중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부채 중 30.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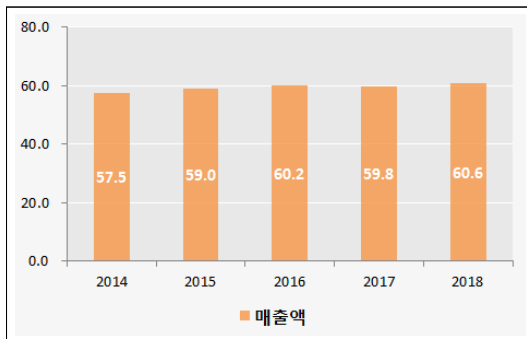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한국전력공사는 지속적인 전력설비 투자로 인해 유형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부족자금 조달로 인해 차입금 및 사채의 발행 증가로 부채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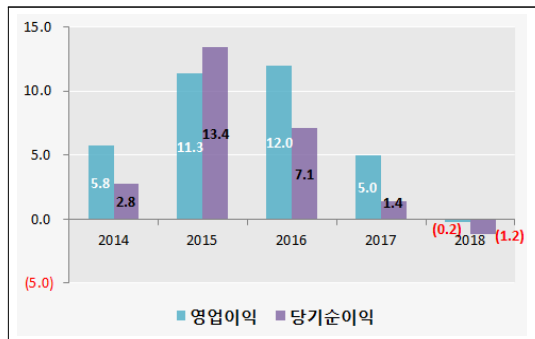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주: () 안은 마이너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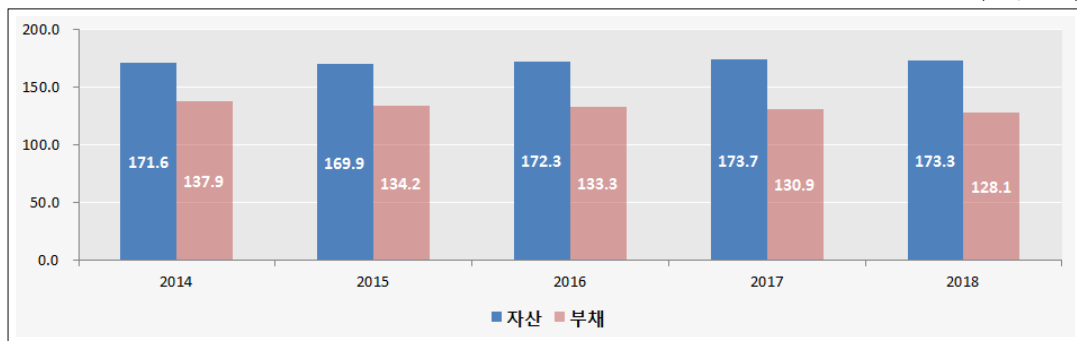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5개년 동안 60조 내외의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력판매량 증가로 인하여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2016년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감소 추세인데, 2018년에는 유가 등 연료단가 상승으로 연료비 및 구입전력비가 크게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조원 감소하였고, 유형자산 손상차손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6조원 감소하였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회계연도 공기업 총자산 중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부채 중 34.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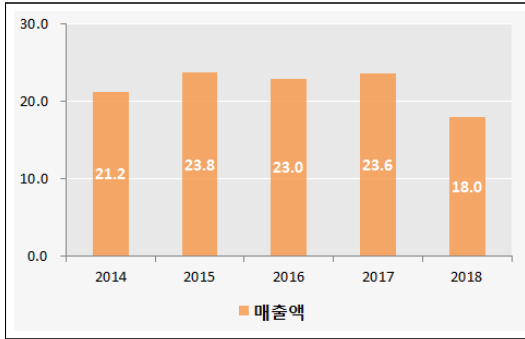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및 토지 분양, 임대주택 등에 따라 자산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전세임대 대여금의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에 대한 차입금 감소로 인해 부채가 줄어들었고,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인한 금융부채 상환으로 부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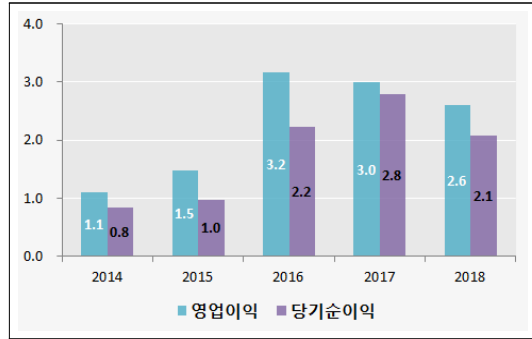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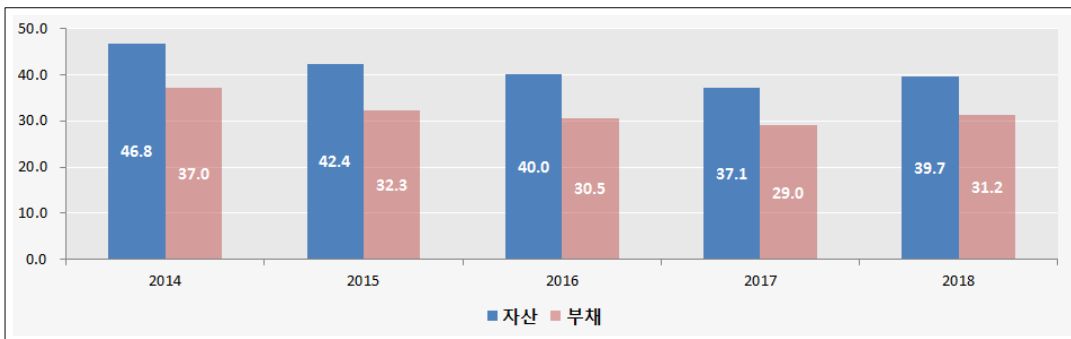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까지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등 토지매출의 증가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 2017년에는 매출 증가와 더불어 본사이전으로 인한 법인세감면을 받음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분양토지매출 감소 등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다.

3)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2018년 공기업 총자산 중 6.8%, 총부채 중 8.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부채〉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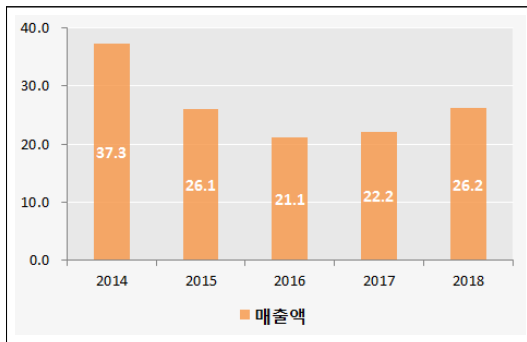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까지 해외자원개발투자 및 국내설비투자 등으로 자산과 차입금 및 사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가스판매량 및 판매단가 하락으로 매출채권 감소, LNG 단가 하락으로 재고자산 감소, 해외투자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등으로 자산이 감소하였고, 운영자금 규모 축소로 차입금이 감소하여 부채가 줄어들었다.

2018년에는 재고물량 및 구매단가 상승에 따른 재고자산 증가 등으로 자산이 증가하였고, 운전자본 증가에 따른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한 차입금 감소 등으로 부채가 전년 대비 2.2조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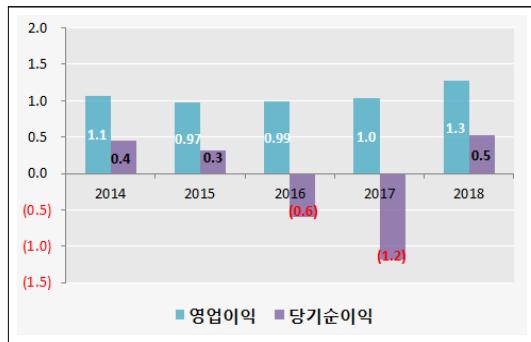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주: () 안은 마이너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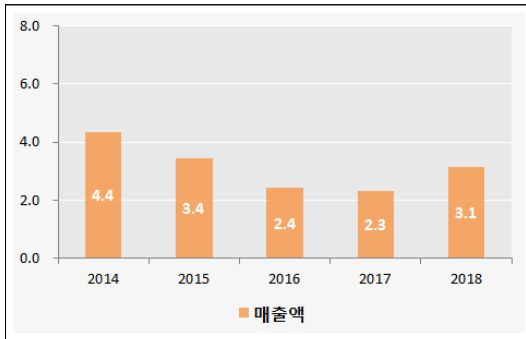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 이후 판매물량 감소 및 천연가스 판매단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2018년의 경우 천연가스 판매량 증가 및 판매단가 상승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4조원 증가하였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해외자원개발자산 등의 손상차손 발생(2016년: 1조 49억원, 2017년: 1조 7,304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손상차손(1,032억원) 감소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되었다.

4) 한국석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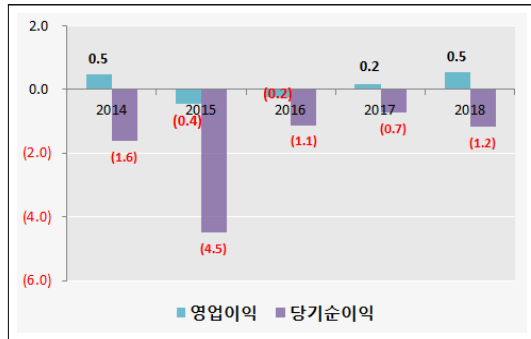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주: () 안은 마이너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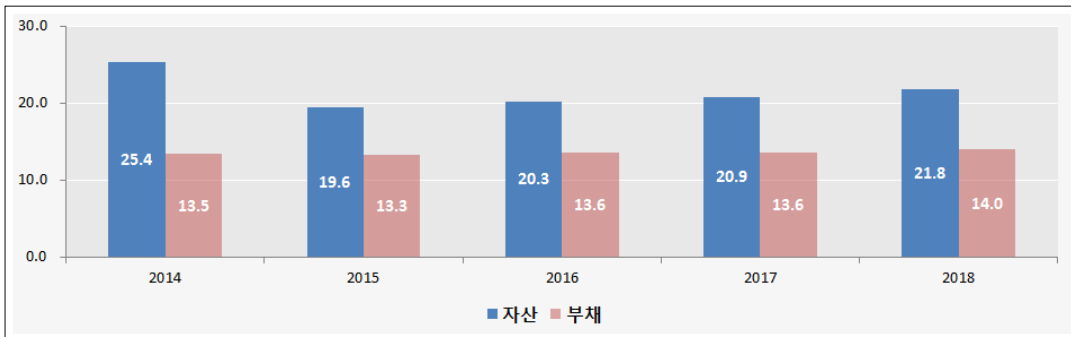
한국석유공사는 2014년 정제사업부문의 종속기업을 매각하면서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후로도 유가 하락 등으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8년에는 원유와 가스 판매단가 상승 및 판매량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발생(2014년: 2조 586억원, 2015년: 3조 1,920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8년의 경우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 손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5) 한국수자원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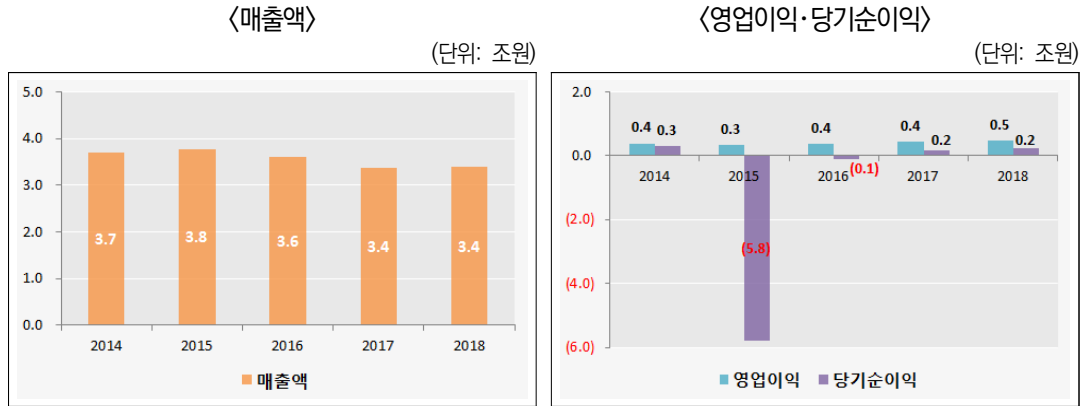
〈자산·부채〉

(단위: 조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한국수자원공사는 2015년 4대강 투자금 회수방안 확정으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회수금액의 차이를 무형자산손상(6.3조원)으로 인식하여 자산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자산·부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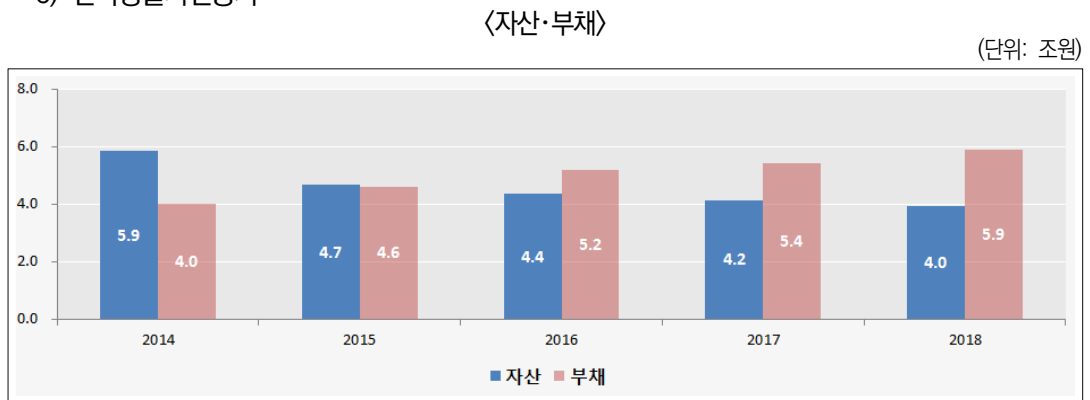
주: () 안은 마이너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한국수자원공사는 분양매출의 증가로 인해 2015년까지 매출액의 증가를 보였으며 2016년부터는 분양매출의 감소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15년 4대강 무형자산손상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을 크게 기록하였다.

6) 한국광물자원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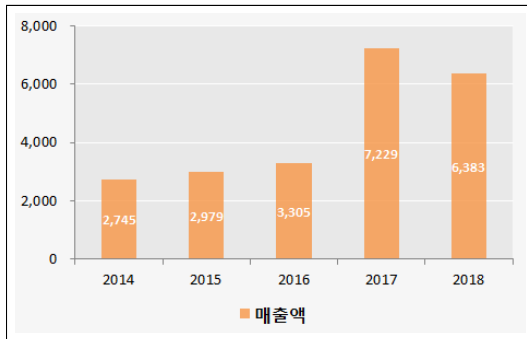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4년까지 볼레오광산 투자로 인해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볼레오광산 손상 및 해외투자주식 손실로 자산이 감소하였고,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한 사채 및 글로벌본드 발행으로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부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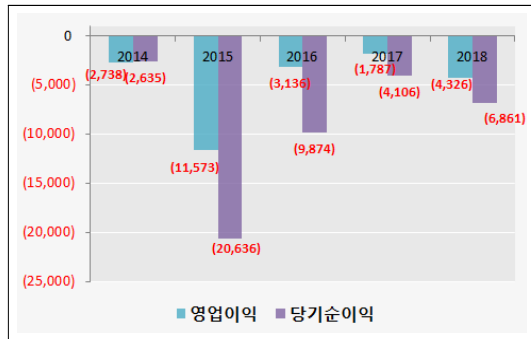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억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주: () 안은 마이너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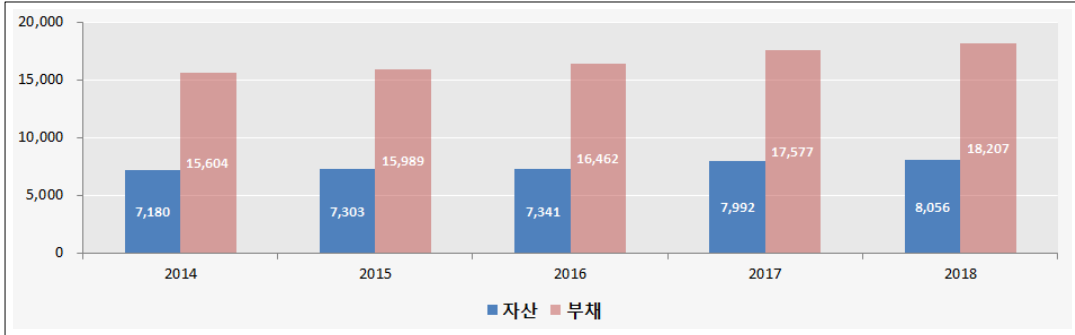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매출액은 광산물 판매, 지분투자회사의 지분법이익, 대부투자 이자수익 및 외 환거래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에는 암바토비의 지분법 손실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장기 광물가격 전망치 하락에 따른 투자주식 평가손실 및 유·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2018년에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 등 자산 손상과 암바토비 니켈광산의 투자지분 평가손실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2,755억원 증가하였다.

7) 대한석탄공사

〈자산·부채〉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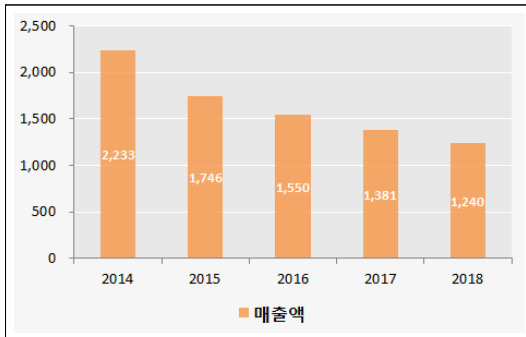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대한석탄공사는 시설투자로 인한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증가로 인해 자산은 늘어나고 있으나, 운영자금 부족 및 지속적인 적자로 차입금을 늘리면서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완전자본잠식이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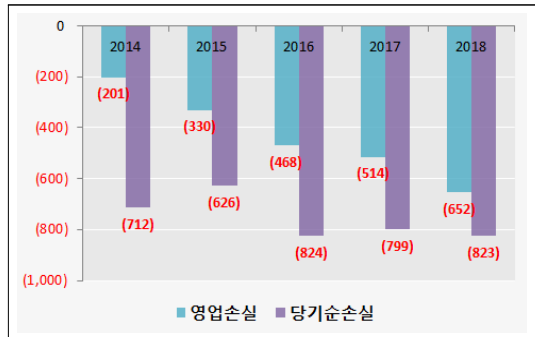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억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주: () 안은 마이너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대한석탄공사는 2014년까지는 안정지원금의 증가로 인해 매출액이 늘어났으나, 2014년 이후 동절기 이상고온으로 무연탄 판매액이 급감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이후에도 석탄산업의 지속적인 생산 감축으로 경제성을 상실하여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매출액의 영향으로 2014년까지는 소폭 개선되었지만, 2015년 이후 경영실적이 다시 부진해지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연탄 등 수요 감소로 인한 판매 부진으로 당기순손실이 심화되었다.

04

공익법인회계 동향

1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2017년 12월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제정되고 2018 회계연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들은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에 국세청 결산서류 양식 또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그동안 공익법인마다 제각각 작성하던 결산자료를 통일된 원칙으로 작성함에 따라 공익법인 간의 비교 가능성과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기준 제정에 따라 변화된 공시내용을 중심으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가. 공익법인 결산공시 개요

1) 공시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공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종교단체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분	적용 대상	기한
의무공시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 3억원 이상 ※ 종교단체 제외	사업연도 종료일~4개월 이내
자율공시	- 자산총액 5억원 미만 -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 3억원 미만 ※ 종교단체 포함	

2) 공시 서류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에 표준서식을 명시하고 있다. 공시되는 결산서류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결산서류 서식명	별지 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별지 제31호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별지 제31호 부표1
1)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사항 2) 주식 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주식 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 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보유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31호 부표2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별지 제31호 부표3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별지 제31호 부표4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별지 제31호 부표5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정형서식 없음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	정형서식 없음
외부전문가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정형서식 없음

3) 열람방법

가) 홈택스 우측 상단메뉴의 '공익법인공시' 클릭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우측 상단 메뉴에 있는 '공익법인공시'를 클릭한 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버튼을 클릭하면 공익법인들이 등록한 공시목록 화면이 보인다.



나) 공익법인명 찾기 또는 공익사업 유형별 공시기간별 검색

이 화면에서 법인명을 입력하면 해당 공익법인이 작성하여 등록한 결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확인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유형(교육, 학술·장학·자선, 사회복지, 의료, 문화, 기타) 또는 공시기간을 지정하면 해당하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목록

- 공익법인이 작성하여 등록한 결산서류 등을 공시기간별, 공익사업유형별, 개별법인별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명을 클릭하면 해당 법인별 공시내역으로 이동합니다.

공익법인명	<input type="text"/>	법인명찾기	공익사업유형	전체
공시기간	2019-05-01	~	2019-05-31	※ 공시 내용은 2009년1월1일 등록 분부터 열람 가능합니다.

조회하기

나. 주요 재무정보

1) 결산서식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에서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표준서식은 공익법인의 기본사항, 요약 재무정보(재무현황, 자산, 수익, 비용),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여부,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공익목적사업 수익·비용 세부현황, 기타사업 손익 세부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산서식 주요 내용〉

No	구분	내용
1	기본사항	대표자, 주소, 주무관청, 설립근거법 등
2	재무현황	총자산가액, 부채, 순자산 정보
3	자산현황	토지, 건물, 주식, 금융자산 등
4	수익현황	사업수익(기부금, 보조금, 회비) 정보 등
5	비용현황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등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적용회계기준,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여부
7	확인란	대표자 확인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주요 사업의 실적, 향후계획, 사업비 정보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사업수익 및 사업외 수익 세부현황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기타사업의 사업 및 사업외 손익 세부현황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비용의 기능별·성격별 분류

가) 기본사항

'1. 기본사항'은 대표자, 주소, 설립일 등 공익법인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주무관청, 설립근거법,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유형 및 고용 직원 수 등의 정보가 공시되어 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공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2018년1월1일 ~	2018년12월31일	[√] 정기공시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등 명	사회복지법인 []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 - *****
③ 대표자	[]	④ 설립연월일	[]1-13
⑤ 소재지	서울특별시 []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http://www.[].br.kr	⑧ 전자우편주소	[]
⑨ 주무관청	보건복지부	⑩ 기부금(단체) 유형	[]법정 []지정 []기타
⑪ 설립근거법	[]		
⑫ 설립유형	[]재단법인 []사단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공공기관 [√]기타		
⑬ 공익사업유형	사회복지		
⑭ 설립주체	[]개인 []기업 []개인·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⑯ 미사수	19 명	16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4,861 명
⑰ 고용직원수	388 명		

나) 요약 재무현황

'2. 재무현황 ~ 5. 비용현황'에서는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의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등 기본적인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재무현황 (단위: 원)								
구분	18총자산가액	19부채	20순자산					
			21소계	22기분순자산	23보통순자산	24순자산조정		
㉔ 총계 (㉔=㉕+㉖)	834,943,940,171	12,452,933,052	822,491,007,119	80,842,278,844	871,645,725,475		C	
㉕ 공익목적사업	828,236,780,999	11,451,286,228	816,785,494,773	80,842,278,844	863,943,216,129		C	
㉖ 기타사업	8,707,159,172	1,001,646,828	7,705,512,348	0	7,705,512,348		C	
3. 자산현황 (단위: 원)								
구분	25총자산가액	26토지	27건물	28주식 및 출자지분	29금융자산	30기타자산		
㉗ 총계 (㉗=㉘+㉙+㉚)	834,943,940,171	20,734,010,536	6,808,891,583	0	862,434,369,109	16,899,879,945		
㉘ 공익목적사업	828,236,780,999	14,742,137,193	4,130,051,343	0	891,414,083,866	16,950,508,796		
㉙ 기타사업	8,707,159,172	6,991,873,373	1,678,840,240	0	1,020,274,414	18,371,145		
4. 수익현황 (단위: 원)								
구분	31총계	32사업수익					38사업외수익	39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33소계	34기부금	35보조금	36회비수익	37기타		
㉛ 총계 (㉛=㉜+㉝)	866,411,928,280	849,140,285,009	903,216,545,727	2,130,390,782	0	43,793,348,497	22,878,792	7,248,794,452
㉜ 공익목적사업	866,278,383,836	848,395,943,028	903,216,545,727	2,130,390,782	0	43,049,038,517	16,215,461	6,887,195,142
㉝ 기타사업	1,133,574,645	744,311,980				744,311,980	7,663,331	381,599,310
5. 비용현황 (단위: 원)								
구분	40총계	41사업비용					47사업외비용 기타	48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42소계	43사업 수행비용	44일반 관리비용	45모금 비용	46기타		
㉞ 총계 (㉞=㉟+㊱)	921,884,119,773	912,547,616,145	883,097,978,190	10,387,119,527	18,161,542,219	940,978,209	723,490,847	8,413,012,981
㉟ 공익목적사업	920,284,849,939	911,608,839,938	883,097,978,190	10,387,119,527	18,161,542,219		723,487,847	7,984,522,386
㊱ 기타사업	1,389,469,834	940,978,209				940,978,209	3,000	448,490,622

다)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여부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에서는 공익법인이 어떤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외부 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49복식부기 여부	[]여 []부	50적용 회계 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
51세무확인 여부	[]여 []부	52외부회계감사 여부	[]여 []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다른 법령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처리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부분에서 공익법인이 어떤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공익법인이 외부 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상증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의무 적용 대상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
세무확인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상
외부회계감사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

라)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에서는 공익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목적사업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익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향후계획과 사업 유형, 사업 대상, 국내외 사업지역의 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세부사업별 사업내용과 사업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실적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 외의 사업으로 합산되어 나타난다.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및 평가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교육훈련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의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협력사업 8.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봉사증진(코드8200) []모금활동(코드8300)						
③사업대상						
[]모두 해당 [x]아동 [x]청소년 [x]노인 [x]장애인 [x]외국인(다문화) [x]가족 여성 []일반대중 []기타						
④국내 주요 사업지역						
[x]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세종 []제주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전세계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x]해당 없음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8100	사업명	지정기탁사업	사업수행비용	693,352,967,284
사업내용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대하여 그 지정 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사업지역	전국	
2	코드	8100	사업명	기획사업	사업수행비용	121,311,925,148
사업내용	민간복지 발전 및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기획사업에 지원하는 사업			사업지역	전국	
3	코드	8100	사업명	긴급지원사업	사업수행비용	17,638,500,235
사업내용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배분하는 사업			사업지역	전국	
4	그 외 사업		7	개	사업수행비용	50,794,585,523 원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10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883,097,978,190 원

마)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목적사업 부문의 수익을 크게 사업수익과 사업외 수익으로 구분하며 사업수익을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산공시양식의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은 회계기준에 따라 기부금품, 보조금, 회비수익, 기타공익목적사업 수익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기부금품은 개인, 기업 및 모금단체 등 다른 공익법인의 지원금품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기부금수익 중 기부물품의 금액을 별도로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기부금 수익의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1. 사업수익	948,395,943,026	
1) 기부금품	903,216,545,727	
(1) 개인기부금품	131,943,348,737	
(2) 영리법인기부금품	650,798,326,620	
(3) 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45,978,985,999	
(4) 기타기부금품	74,495,884,371	
기부금품(1)-(4)에 포함된 기부금품	당기 164,538,765,275	전기 155,057,146,358
2) 보조금	2,130,360,782	
3) 회비수익	0	
4)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	43,049,036,517	
2. 사업외 수익	15,215,461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6,867,195,148	
4. 총합계(수익)	955,278,353,635	

바)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서는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의 사업손익, 사업외손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기타사업으로 흔히 발생하는 금융, 부동산 등은 원천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양식을 마련하였다.

구분	①합계	기타사업손익								⑩사업외손익
		사업손익								
		금 용				부 동 산				
		②소계	③이자	④배당	⑤기타	⑥소계	⑦임대	⑧매각		
수익금액	751,975,311	4,914,062	4,914,062	0	0	744,311,980	744,311,980	0	0	2,749,269
비용	940,979,209					940,976,209	940,976,209	0	0	3,000
이익(손실)	-189,003,898	4,914,062	4,914,062	0	0	-196,664,229	-196,664,229	0	0	2,746,269

사)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자료에서는 공익법인이 예산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공익법인의 사업비용을 사업수행비용(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비

용), 일반관리비용(기획·인사 등 경영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모금비용(모금활동을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또한 각 항목을 다시 분배비용(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한 비용), 인력비용(고용된 인력의 인건비), 시설비용(임차료, 시설관리비 등의 시설관련 비용), 기타비용(교통비, 소모품비, 외주용역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합계	사업	일반	모금	
1. 사업비용	911,606,639,936	883,097,978,190	10,357,119,527	18,151,542,219	0
(1) 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	869,592,146,464	869,592,146,464	0	0	0
1) 국 내	869,592,146,464	869,592,146,464	0	0	0
2) 국 외	0	0	0	0	0
(2) 인력비용	24,865,989,645	9,455,931,697	5,603,638,949	9,806,418,999	0
(3) 시설비용	3,076,157,438	828,245,997	1,438,804,686	809,106,755	0
(4) 기타비용	14,072,346,389	3,221,654,032	3,314,675,892	7,536,016,465	0
2. 사업외 비용	723,487,647	0	723,487,647	0	0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	7,964,522,356	7,964,522,356	0	0	0
4. 총합계(비용)	920,294,649,939	891,062,500,546	11,080,607,174	18,151,542,219	0

2)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기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이다. 이 중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는 국세청 공시 결산서류로 홈택스 공익법인결산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석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면 된다.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는 사업별 구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특징이 있다. 각 사업은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으로 나뉜다.

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 말 공익법인의 재무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재무보고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사업수행에 따른 성과와 결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운영성과표는 ‘가. 결산서식의 9.~11.’ 양식과 유사하다.

[별지 제1호 서식]						
운영성과표						
	제 64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65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명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1	공익목적 사업2	기타사업 3	통합4	공익목적 사업5	기타사업 6
I. 사업수입	77,394,132,378	73,950,954,042	3,443,178,336	0	0	0
1. 기부금수익	60,119,445,902	60,119,445,902	0	0	0	0
2. 보조금수익	13,507,976,412	13,507,976,412	0	0	0	0
3. 회비수익	23,900,000	23,900,000	0	0	0	0
6. 기타	3,742,810,064	299,631,728	3,443,178,336	0	0	0
II. 사업비용	76,640,526,585	73,060,391,826	3,580,134,759	0	0	0
1. 사업수행비용	71,651,275,357	71,651,275,357	0	0	0	0
2. 일반관리비용	1,409,116,469	1,409,116,469	0	0	0	0
4. 기타사업비용	3,580,134,759	0	3,580,134,759	0	0	0
III. 사업이익(손실)(I-II)	753,605,793	890,562,216	-136,956,423	0	0	0
IV. 사업외수익	26,351,090	0	26,351,090	0	0	0
V. 사업외비용	34,745,114	7,339,879	27,405,235	0	0	0
V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30,411,232	0	30,411,232	0	0	0
V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94,563,225	94,563,225	0	0	0	0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809,363,762	977,785,562	-168,421,800	0	0	0
IX. 법인세비용	0	0	0	0	0	0
X. 당기운영이익(손실)(VIII-IX)	809,363,762	977,785,562	-168,421,800	0	0	0

3) 감사보고서

공익법인회계기준은 15개의 주석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필수적 주식기재사항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 사업 내용
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을 포함한다)
3.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현물기부의 내용
6.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7.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8.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 거래 내역
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1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1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13.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
1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
15. 그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공익법인에 관련성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가) 현물기부의 내용

기부자들로부터 기부받은 현물자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공시되며, 주요 기부자의 경우 기부자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 현물기부의 내용

당기 중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내역	금액	기부자
기부물품	2,890,308,310	아이비클럽
	1,841,644,224	(주)영흥
	1,203,304,703	제로투세븐
	836,719,820	한국쓰리엠주식회사
	168,430,000	(주)COMPANY
	3,076,582,259	기타
합계	10,016,989,316	

나)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내역

해당 주식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재무정보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의 범위이며, 이 밖에 공익법인의 판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1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용

재단은 사회복지등 목적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현물(생활용품)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물구매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관계	당기		전기	
		사용내역	합계	사용내역	합계
롯데렌탈(주)	계열사	매입 등	4,257	매입 등	5,676
롯데지알에스(주)	계열사	매입 등	9,727	매입 등	4,899
롯데쇼핑(주)	계열사	매입 등	390,284	매입 등	548,406
롯데제과(주)	계열사	-	-	매입 등	1,267
(주)호텔롯데	계열사	매입 등	77,237	매입 등	101,713
롯데푸드(주)	계열사	-	-	매입 등	19,200
합 계			481,504		681,161

다)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 과목 등 거래 내역

이 주식은 회계기간 중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외의 발생한 중요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4.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의 거래내역

당기 중 우리 단체의 단일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역
한국국제협력단	보조금수익	7,556,570,621	고유목적 사업비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국내사업비	10,301,402,414	고유목적 사업비
글로벌파트너십센터	해외사업비 외	51,161,142,650	고유목적 사업비

라)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이 주석은 회계연도 말 공익법인의 순자산의 크기와 회계기간 동안의 변동 내역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전년도의 순자산에서 당기운영이익, 미실현평가손익 등 증감 사유를 가감하여 당해 기말 순자산 금액을 보여준다.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당기 중 순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과목	통합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조정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조정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조정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당기초	65	-	54,562	-	65	-	54,618	-	-	-	11,055	-
당기운영이익	-	-	17,094	-	-	-	16,988	-	-	-	105	-
지분법지분변동	-	-	-	(703)	-	-	-	(703)	-	-	-	-
당기말	65	-	71,656	(703)	65	-	71,606	(703)	-	-	11,160	-

1

GFSY 데이터베이스의 최근 개선사항 분석
(Recent Improvements to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Database in Response to Analytical Needs)

본고는 IMF에서 발표(2013. 1. 14.)한 IMF “Working Paper No. 13/15”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 바람

가. 도입

최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재정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공공재정 연구에서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며, 특히 국가나 지역 간의 주기적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시계열 자료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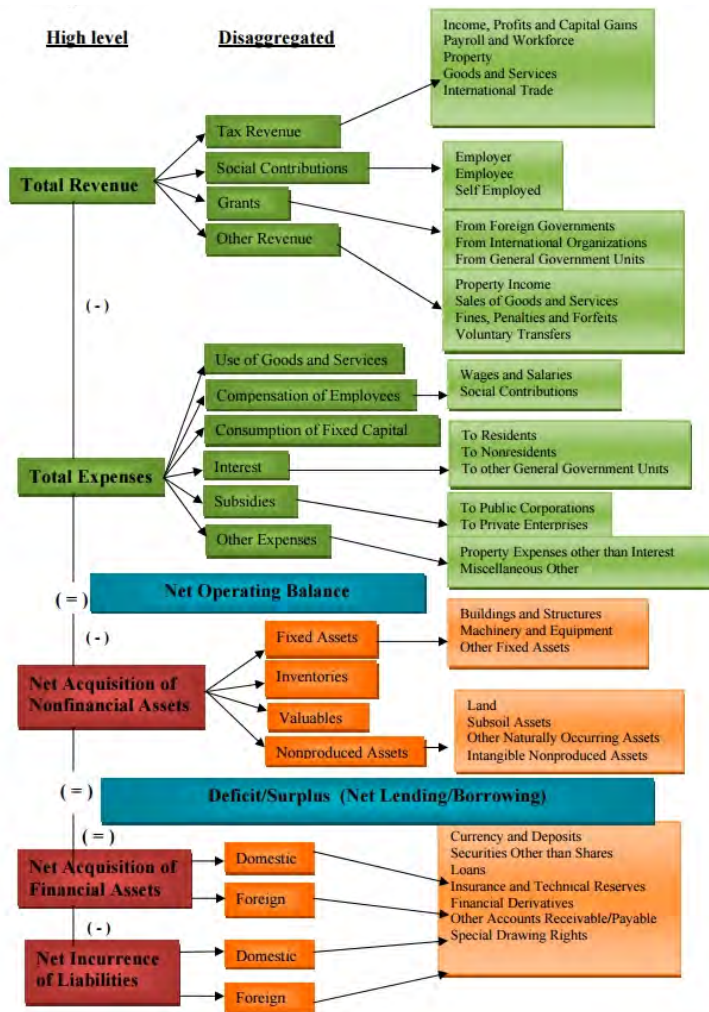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재정통계연감, 이하 ‘GFSY’)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국가그룹에 대한 재정정보의 기초자료가 되지만, 이용자가 통계 작업에 활용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다. IMF 통계국은 이러한 이용자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 데이터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GFSY의 이점과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접목시키기 위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함에 있다.

나. GFSY 데이터베이스 개요

정교한 재정통계의 산출을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이 방법론적인 예측 및 제도단위의 포괄범위에 대한 정의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GFSY 데이터베이스는 국민경제 회계체계의 국제기준인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국민계정체계, 이하 ‘2008 SNA’)에 기초한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재정통계 매뉴얼, 이하 ‘GFSM 2001’)을 따른다. 이 매뉴얼은 재정통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다양한 국가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체계를 제공한다.

GFSY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IMF의 국제재정통계(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거시경제 분야(GDP 및 물가 데이터, 통화 및 국제수지 데이터)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GFSY는 약 140개국에서 40년에 걸친 공공 재정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한 공공 재정의 장·단기 추세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림 1] GFSY 데이터베이스 개관



출처: IMF, "Recent Improvement to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Database in Response to Analytical Needs", Working Paper, Figure 1

□ 상세한 회계체계에 따른 공공재정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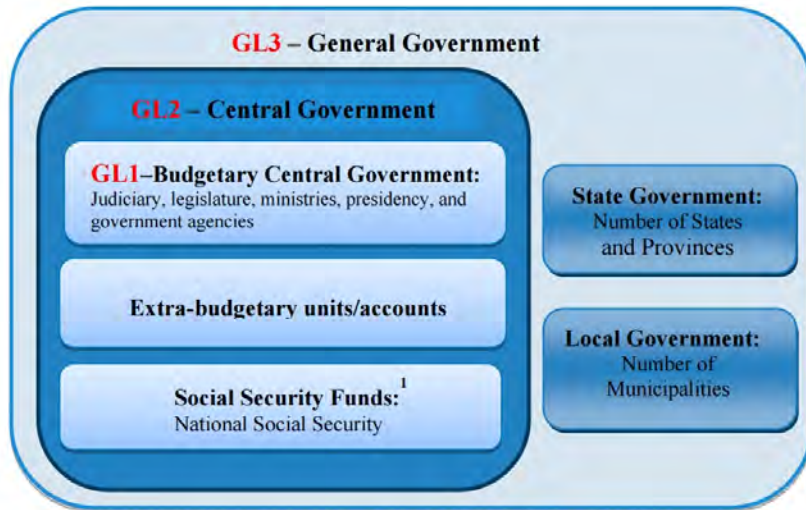
[그림 1]의 왼쪽은 상위계정을 의미한다. 총수입 및 총비용과 같은 항목은 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과 같은 다수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나타나지만, GFSY 데이터베이스는 보다 세부적으로 산출되는 특징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정부운영표 순융자/순차입 계정 하위로 금융자산과 부채의 운영결과(금융자산의 순취득, 부채의 순발생)를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GFSY 데이터베이스는 다수의 국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그림 1]과 유사한 분류로 저량(자산 및 부채) 데이터 또한 제공한다. GFSY는 정부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 of Government: COFOG)에 따라 IMF eLibrary 웹사이트(<http://elibrary-data.imf.org>)를 통해 자료를 제공한다. 정부기능별 분류는 일반 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활동,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보건, 휴양·문화·종교, 교육, 사회보호로 분류한다.

□ 정부의 제도단위 구분

GFSY 데이터베이스의 또 다른 이점은 정부를 제도단위로 구분한 것이다([그림 2] 참조). 제도단위의 명시적 구분이 연구에 주는 유용성은 최근 증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공공재정의 분권화(중앙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간의 재정권한 이양)에 대한 관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2008 SNA, GFSM 2001과 같은 거시경제통계에 대한 매뉴얼에 정부의 포괄범위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재정분석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GFSY에는 각 정부를 구성하는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긴 제도표(Institutional Tables)가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는 기관 그룹별로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정부 제도단위 구조



출처: IMF, “Recent Improvement to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Database in Response to Analytical Needs”, Working Paper, Figure 2

예를 들어, 가능한 가장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이용자는 일반정부(GL3) 데이터를 우선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GL2) 데이터, 마지막으로 예산중앙정부 데이터(GL1)를 이용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도단위에 따라 국가 재정상태에 큰 차이를 보이며, 이용자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통계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림 2]는 통계방법론에 따른 정부의 제도단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광의의 정부에 대한 정의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위 부문을 포괄한 일반정부(GL3)이다.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제도단위 간의 구분은 중앙정부와 주정부·지방정부 간의 구분이며, 이 구분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중앙정부(GL2)는 전체 영토에 걸쳐 단일한 중앙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정부이다. 주정부·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리적으로 독립되어 독자적인 권한이 있는 별도의 제도단위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집계할 때 GFSY는 연결방식을 통해 중복계상을 방지한다. 즉, 개별 부문(중앙정부, 주정부·지방정부)을 통합(일반정부)하여 집계하면 개별 부문 간의 내부거래는 제외하고 집계된다. 아직 많은 국가에서는 예산중앙정부(GL1) 레벨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으며, 3가지 레벨의 데이

터를 모두 제공하는 국가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원하는 레벨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국가의 경우 차선책으로 하위 레벨 값을 이용해야 하므로 데이터베이스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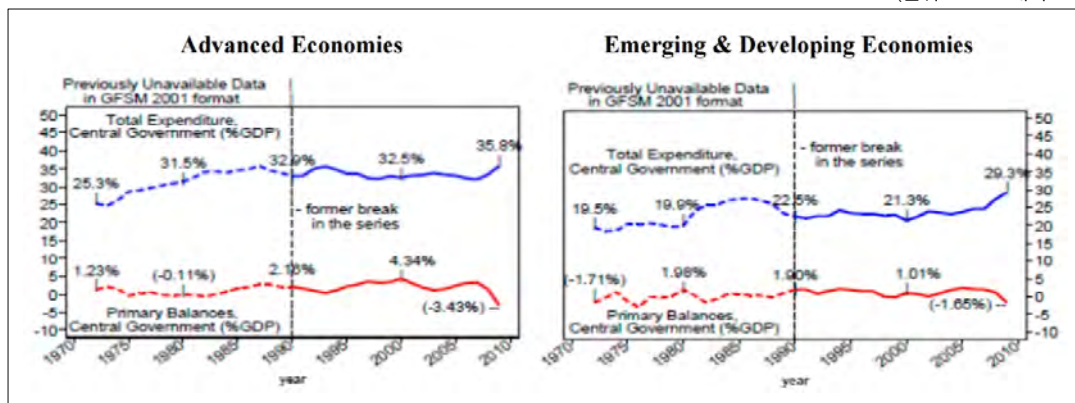
다. 최근 정보 이용자 문제 개선 사례

□ 장기 재정 추세

2010년 IMF 통계국은 이용자들의 수요에 따라 1990년 이전의 GFS 데이터베이스(1972~1989년)를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소급 연장하였다. 기존 데이터베이스는 GFSM 2001 체제 채택 이후 자원제약으로 1990년 이후부터 재작성된 것이다. 동 프로젝트의 결과로 1972년부터 현재까지 86개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중앙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가 구축되었다. 해당 자료는 GFS CD-ROM(2011년 9월호 이후)과 IMF eLibrary 웹사이트(<http://elibrary.imf.org>)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림 3] GFSY 데이터베이스 연장: 총지출 및 기초수지

(단위: GDP 대비 %)



출처: IMF, "Recent Improvement to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Database in Response to Analytical Needs", Working Paper, 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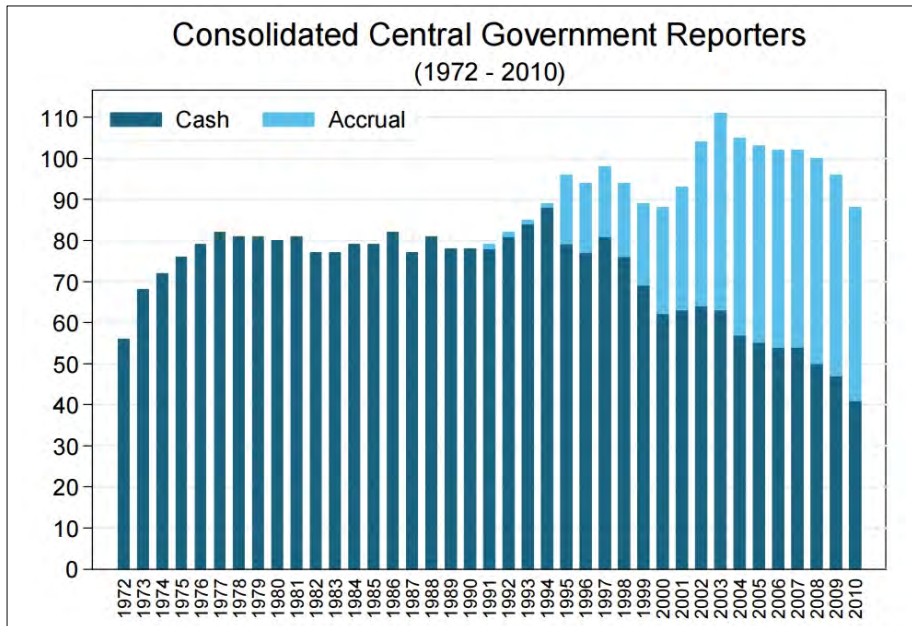
[그림 3]은 데이터베이스 시계열 연장 전후로 나타난 중앙정부 총지출 및 기초수지 데이터의 유용성 증가를 볼 수 있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주요 집계, 구성요소, GFSM 2001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

의 기초수지로 구성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정부기능별 지출에 이러한 상세 정부지출 데이터를 제시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데이터베이스를 저량 데이터(공공부문 부채 등)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국가별 데이터 비교: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그리고 통화동맹

GFSM 2001은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뿐만 아니라 발생주의에 기초한 정부운영표를 소개하고 있다. 발생주의 회계는 경제적 가치의 변동을 인식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한다. 반면, 현금주의 회계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를 기록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기부(예: 식량 원조)를 받으면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수익으로 기록되나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현금거래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기록되지 않는다. 현금주의 회계는 재무 유동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정부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원제약으로 인해 일부 보고서만 발생주의 회계로 보고하고 있는데, [그림 4]는 발생주의 회계 기준을 적용한 국가별 보고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림 4]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



출처: IMF, "Recent Improvement to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Database in Response to Analytical Needs", Working Paper, Figure 4

시계열횡단면분석(Cross-sectional time series: CSTS)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에게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은 비교 가능성 감소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별 보고서를 적용한 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현금주의 데이터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크게 줄어들며, 발생주의 데이터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분석기간과 국가의 수가 크게 제한된다.

현금주의 데이터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정교하게 전환하는 기술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체계적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매개변수분석(parametric analysis)에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연구자들은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현금주의 데이터를 발생주의 기준의 대응치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 성과의 동태적 분석을 복잡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은 국가통화가 초국가적 통화로 대체되는 통화동맹(monetary union)의 형성이다. GFSY 데이터베이스는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표시되며, 새로운 통화가 채택되면 시계열 단절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통화동맹 형성 시 소속 국가(EU 회원국)들의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공공재정 데이터베이스는 유럽연합 이전의 개별 국가통화 기준(1972~1999년)과 유로화 기준(1999년~현재, EU 회원국의 기준)으로 나뉘며, 전체 기간에 대한 분석이 복잡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통계 산출 기관들은 통화동맹에 대한 대응으로 EU 회원국의 1999년 이전 개별 국가통화기준의 데이터를 고정된 환율을 적용해 변환하여,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였다. IMF 통계국 역시 고정된 환율을 적용하여 모든 EU 회원국의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데이터는 현재 1995~2010년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012년 현재,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1972~2010년까지 확장하는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데이터 누락 보완

GFSY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자들에게는 데이터의 누락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이러한 누락은 데이터의 정보 유용성을 악화시킨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 거시경제 위기나 전쟁을 겪고 있는 국가는 선진국이나 안정적인 국가보다 재정통계를 보고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 이들 국가의 누락된 항목에는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GFSY 데이터베이스에 병합함으로써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연구자가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완전성을 유지하면서, 누락된

관측치가 있는 비교 데이터를 어느 수준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병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수반하게 된다.

지난 40년 동안 데이터 유용성이 크게 증가했지만 특히 재무상태 데이터에는 큰 격차가 남아 있다. 통계국은 GFSM 2001 체제 내에서 국가별 데이터 격차를 향후 몇 년 동안 해소하기 위해 이 문제에 착수하였다. 이 시도는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공공재정 데이터의 유용성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무적인 한계는 많은 국가들이 정부 자산·부채에 대한 데이터 제공 기관과 수익·비용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전체 재무상태 데이터를 동시에 가져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2010년에 IMF 통계국은 세계은행(World Bank), Eurostat 및 OECD와 같은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부채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동 데이터는 GFSY 데이터를 보완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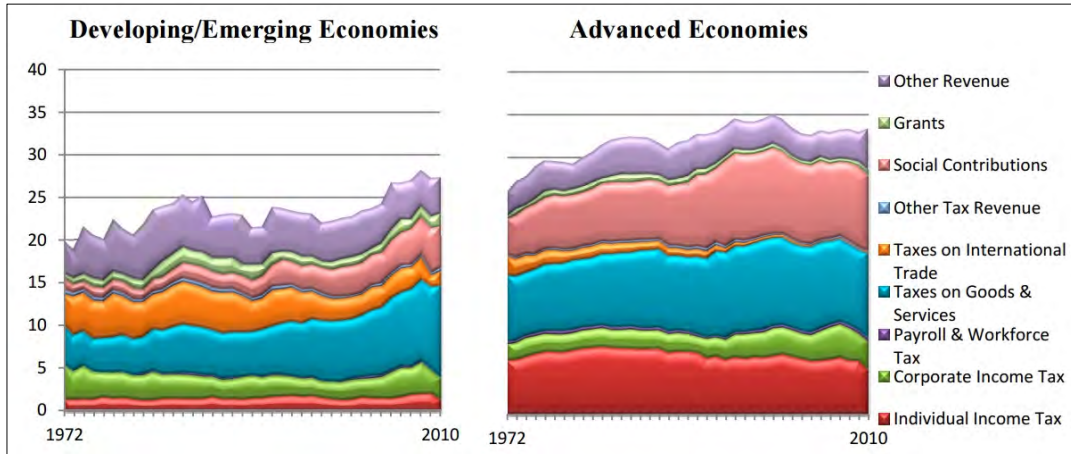
□ 연구 프로젝트,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이용자 집단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을 통해 통계국은 이용자들이 GFS를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였다. 이에 통계국은 IMF 내부 및 외부 이용자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2011년 IMF FAD(Fiscal Affairs Department)의 요청으로 통계국에서는 상위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GFSM 2001 체제에 따라 현재부터 197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 상세한 통계로 확대하였다. 동시에 경제학자들은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이용 가능한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여 누락된 많은 데이터를 보완하였다. 이 작업은 과거 데이터(1990~2010년)가 있는 86개국 데이터베이스에 추가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냈다. 변환된 세부 데이터의 예시는 [그림 5]와 같으며,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 및 선진국에서 40년 간 수익 구성의 추세이다.

[그림 5] 중앙정부 수입비교

(단위: GDP 대비 %)



출처: IMF, “Recent Improvement to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Database in Response to Analytical Needs”, Working Paper, Figure 5

□ 관련 데이터 수집 기관과의 조화

2011년 통계국은 국가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계 데이터를 수집하는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GFSY 및 OECD 수익통계에 발표된 특정 연간 정부수입 데이터는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진다. 이에 IMF와 OECD는 두 기관의 요구사항을 포괄하여 공통 템플릿을 개발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두 기관의 수익 통계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구 간 데이터 공동수집 협력에 대한 방법론적 체계를 구성하였다.

통계국은 GFSM 2001 개념과 정의 및 GFSY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사항을 활용하여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의 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있다.

통계국은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와 협력하여 GFSY 집계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호환하여 자동으로 입력되게 한다. 이와 비슷한 시도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함께 시작되었다. 관련 유형의 협력은 연방 사무국(Commonwealth Secretariat)과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와 함께 수행되었다. 두 기관 모두 약 80개 회원국에 부채 기록 및 부채 관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GFSY 코드가 내장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GFSY 데이터베이스와 호환되는 형식으로 재정통계를 이용할 수 있다.

라.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는 통계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GFSY를 포함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가별 제도적 구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면, 공공재정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GFSY에는 이러한 정보가 담긴 제도표(Institutional Tables)를 책자로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통계분석 시 대부분의 이용자는 이러한 메타데이터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제도표에서 설명된 것만큼 구조화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데이터 이용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국은 먼저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기관 구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2012년부터 시작하였다. 이는 GFSY 출판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한 메타 데이터에 기초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유럽의 정부부문을 구성하는 제도단위를 연계하려는 노력을 감안하여, 이러한 메타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업 또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고주체 정보, 기초자료,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보조예산단위 및 사회보장기금의 하위 부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IMF 내부에서 먼저 실행한 뒤 개별 국가들에 확산 적용할 것이다. 정부의 제도적 구조는 이용자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의 중요성과 보고된 데이터와 기관과의 정합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 IMF eLibrary에서의 GFS 접근방법

GFS는 IMF eLibrary Data(<http://data.imf.org>)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데이터를 식별, 선택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데이터 이용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기존에 발행되고 있는 데이터 보고서는 IMF eLibrary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목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동 보고서는 IMF 통계국 정부재정 전문가가 작성하였으며 데이터 목차에서 GFS 항목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자주 이용되고 중요한 데이터 및 집계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체 쿼리 작성 기능이다. 이 기능을 통해 이용자는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다. 이용자는 데이터의 범위를 검색할 때, 이용 가능한 항목만 나오도록 필터링하여 데이터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방법은 IMF eLibrary 홈페이지 데이터 세트 목차의 GFS 쿼리 작성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바. 결론

본고의 목적은 GFSY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고유한 기능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데이터 유용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제도단위를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일관된 방법론적 체계는, 재정통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활용하기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더욱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본질적으로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갖기에, 이용자에게 특정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게 된다. 본문의 논의 역시 이러한 이용자의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재정동향, 국가 간 비교 가능성 및 데이터 누락에 대해 다루며 데이터베이스의 복잡성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지속적인 의사소통 및 협력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GFSY 데이터베이스의 개선은 향후 재정정책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국가회계예규 해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국가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 345조원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GAFSC)는 원가 집계 대상의 세분화를 포함하여 현행 『원가계산에 관한 기준서』(이하,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은 사업의 원가 산출에 관한 지침으로 원가 집계 대상, 집계방법 및 간접 원가 배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가와 원가의 회수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의 작성을 위한 지침이다. 다음은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다.

가. 원가산출의 목적 및 현황

국가회계에서 원가는 국가가 프로그램(사업 또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국가가 원가정보를 산출하려는 목적은 첫째, 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관리자나 예산편성 관계자 등의 정보 이용자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원가의 회수 정도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시 원가정보를 활용하여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는 재정운영표를 통해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사업의 원가 및 재정운영에 관한 원가 회수 내역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재정운영표는 원가에서 수익을 차감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이 있다는 특징을 잘 드러낸다. 원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 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정운영표를 통해 특정 프로그램에서 소모된 원가를 파악할 수 있다.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 국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순원가는 344.6조원으로 감가상각비 등의 발생주의 비용과 간접원가를 포함하므로 실제 예산상의 지출과는 차이가 있다.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 항목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43.3조원으로 전년 대비 1.9조원 감소하였다. 국가 재정운영표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순원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 54개 중앙관서의 재정운영순원가를 공시하며, 이를 통해 각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정운영순원가는 수행한 사업의 원가뿐 아니라 사업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일반적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비용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전체 재정활동을 위해 소요된 원가정보이다.

사업수행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요된 총원가 및 원가 회수 내역은 중앙관서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순원가' 정보로 공시된다.

(단위: 조원, %)

구분	2018년(A)	2017년(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재정운영순원가	343.3	345.2	△1.9	△0.6
1. 프로그램순원가	344.6	328.4	16.2	4.9
(1) 프로그램총원가	439.8	415.6	24.2	5.8
(2) 프로그램수익	95.2	87.2	8.0	9.2
2. 관리운영비	26.5	25.4	1.1	4.3
3. 비배분비용	23.7	34.7	△11.0	△31.7
4. (-) 비배분수익	△51.5	△43.3	△8.2	△18.9
II. 비교환수익 등	351.1	324.1	27.0	8.3
III. 재정운영 결과(I-II)	△7.8	21.1	△28.9	△137.0

출처: 국가통합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 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

$$\text{※ 프로그램순원가} = \text{프로그램총원가(직접원가} \pm \text{간접원가)} - \text{프로그램수익}$$

재정운영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기관운영비와 같이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비용을 더하고,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을 가감하여 표시

$$\text{※ 재정운영순원가} = \text{프로그램순원가} + \text{관리운영비} + \text{비배분비용} - \text{비배분수익}$$

나.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의 구성 및 내용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에서 원가를 정의하고 세부 회계처리지침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예규로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서는 발생한 비용과 수익에 대한 정확한 집계와 구분, 관련 사업으로의 배부 등 원가계산에 관한 일관된 원칙과 재정운영표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원가계산 작성 절차 과정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수집된 증거를 기반으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원가 집계 대상별로 분리 가능한 원가는 직접 부과하고, 분리 가능하지 않은 원가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배부하며 채택한 원가계산 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국가의 원가계산은 원가 집계 대상의 설정, 비용과 수익의 집계,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 행정운영성 경비 구분, 간접원가 배부를 통해 재정운영순원가를 산출하는 절차를 가진다.

가) 원가 집계 대상: 프로그램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원가 집계 대상은 사업 예산의 편성 단위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중에서 원가 측정이 필요한 단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 예산의 편성단위는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 프로그램 예산체계하에서 세출(또는 지출) 예산을 편성하는 단위를 의미하는데, 현재 원가 집계 대상은 재정운영표 작성 대상인 프로그램이다. 국가의 원가계산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재정운영표상 작성 단위인 프로그램으로 통일적으로 정하였으며, 향후 프로그램 이외의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등으로 원가 집계 대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비용과 수익의 집계

국가에는 예산거래와 비예산거래가 있는데, 예산거래는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하며, 비예산거래는 세출 또는 세입 예산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거래로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되는 거래를 말한다. 발생주의 계정과목으로 직접 기록되는 비예산거래와 달리 예산거래는 예산과목을 재무계정과목과 대응시켜 발생주의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비용항목으로 전환 과정이 필요하다.

상기 거래 중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이 원가계산의 대상이 된다. 다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재원을 이전하는 “무상이전지출”, “기타재원이전”, “재원의조달및이전”, “비교환수익”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가계산 대상인 수익과 비용항목을 원가 집계 대상인 프로그램별로 집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되는 프로그램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프로그램 예산편성하에 집행되는 세출 예산을 재무계정과목으로 전환 시 프로그램 정보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며, 세입 예산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구조로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처리의 최하위 단위가 프로그램과 대응되도록 집계하여 관리한다. 비예산

거래의 경우 관련 자산·부채의 프로그램별로 귀속에 따라 대응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응되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과 대응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은 사업 원가가 아닌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된다.

〈비용과 수익의 집계 예시〉

구분	예산목	재무계정과목	비고	원가계산 대상	프로그램 대응	원가 구분
세출	용자금/기타민간용자금	장기용자금	자산	×	-	-
	운영비/시험연구비	선급금	자산	×	-	-
	운영비/시험연구비	유류비	비용	○	철도 안전 및 운영	프로그램총원가
세입	토지대여료	사용료수익	수익	○	철도 안전 및 운영	프로그램수익
	항공항만수입	사용료수익	수익	○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프로그램수익
비예산	-	평가이익	수익	○	-	비배분수익
	-	감가상각비	비용	○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프로그램 사용자자산)	프로그램총원가

출처: 저자 작성

다)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

국가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은 항목은 각각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은 재정운영표에 표시된 프로그램원가와 무관한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으로, 원가 집계 대상인 특정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못하므로 비배분 항목으로 구분한다.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은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회계 책임성과 관련되므로 관리되어야 할 항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으로 처리하도록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다. 첫째, 현재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수입대체경비수입을 제외한 수익은 모두 비배분수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일반회계의 대부분의 수익항목은 프로그램별로 대응이 어려우므로 프로그램수익의 별도 표시를 유예하고 있다. 둘째,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로 편성된 예산이다. 내부거래지출은 회계간거래, 회계기금 간 거래 등을 말하며, 보전지출은 여유자금운용, 차입금원금상환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관리되나, 실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

램원가로 표시하지 않고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다만,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이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운영표상 프로그램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 여유자금 운영과 기금간거래를 프로그램원가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라) 행정운영성 경비 구분 및 간접원가 배부

프로그램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지만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비는 일반적으로 행정지원프로그램으로 별도 편성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집계된 비용을 ‘행정운영성 경비’라 한다.

위와 같이 집계된 행정운영성 경비는 프로그램 관련 여부에 따라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간접원가는 원가 집계 대상과의 인과관계 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별로 배부하여야 한다. 간접원가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었지만 특정 사업에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건비, 지급입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말한다. 간접원가를 배부하기 위해 합리적인 배부기준과 배부받을 프로그램을 정하고 배부 산식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여 배부한다.

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적용이 가능하고 산출이 용이한 것으로 설정해야 하며, 인원수 또는 인건비, 원가 대상의 직접원가, 사용면적 또는 자산금액, 생산품의 수량, 기타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2) 행정형 회계의 원가계산 시 예외사항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서는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원가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형 회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외사항을 두어 사업형 회계보다 단순화된 원가계산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형 회계”의 경우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 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로 정확하고 복잡한 프로그램별 순원가 산출이 요구되는 반면, “행정형 회계”는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로 사업형 회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완화된 원가계산을 허용하고 있다.

가) 프로그램 수익 집계 시 수입대체경비만 구분

행정형 회계의 경우 수입 징수 결정 시 ‘수입대체경비수입’만을 프로그램 수익으로 구분하도록 하

여 단순화하였다. 현재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수입경비대체경비수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은 프로그램별로 대응이 어려우므로 프로그램수익의 별도 표시를 유예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사업과 관련이 있는 수익이라 하더라도 비배분수익으로 집계되며 정확한 프로그램 순원가를 파악하는 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나) 행정운영성 경비의 간접원가 배부 예외

행정형 회계의 경우 행정운영성 경비를 전액 관리운영비로 구분한다. 이는 사업형 회계가 프로그램 관련 여부에 따라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한 후 프로그램에 배부하여 정확한 프로그램 총원가를 측정하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행정형 회계는 프로그램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행정운영성 경비로 일괄적으로 집계되는 경우에도 전액 관리운영비로 구분되므로 프로그램 총원가가 과소계상될 우려가 있다.

〈행정형 회계의 원가계산 시 예외사항〉

구분	행정형 회계	사업형 회계
프로그램수익	수입대체경비 한정	모든 수익 대상 프로그램 대응 여부 검토
행정운영성 경비	전액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 및 간접원가

출처: 저자 작성

위와 같이 국가는 회계실체 특성 및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의 원가계산 차이를 두고 있다. 다만, 국가는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국가회계실체 간의 원가계산방식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 현행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행 원가계산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원가 집계 대상을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는 점에 있다. 현재는 디브레인 시스템 운영과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초기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가 집계 대상을 재정운영표 작성 단위인 프로그램별로 통일하여 적용하고 있다. 최근 자원의 효율적 활용 여부 평가, 원가회수를 파악을 통한 사업성과 측정 등 원가정보 산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통제나 의사결정을 위해 개별 측정이 필요한 단위로 원가 집계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둘째로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 유형에 따라 원가계산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규상 행정형 회계는 행정운영성 경비를 모두 관리운영비로 반영하여 간접 원가 배부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수입대체경비수입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원가계산절차를 통해 집계된 원가를 통합하여 재정운영표 등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국가회계실체 간에 비교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행정형 회계는 프로그램충원가가 과소계상될 우려가 있다. 사업형 회계에 비해 행정형 회계가 더 적은 원가를 투입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프로그램수익으로 표시되지 않아 수익으로 인하여 원가 회수 정보가 아예 누락될 우려가 있다. 일관되지 못한 원가 정보의 산출은 적정한 성과평가와 자원배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산출된 원가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한다.

라. 마치며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은 세부사업 수준에서 검토하고, ‘성과평가’는 단위사업 수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제도에 의해 정확한 성과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원가정보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가계산은 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디브레인 시스템을 통해 예산과 결산 및 재무회계 정보가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예산집행의 결과가 정책사업 원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래서 최근에는 디브레인 시스템이 가동된 지 12년 만에 차세대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전면 재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는 곧 올바른 예산편성과 정확한 성과평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원가 집계 대상의 세분화 과제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행정형 회계에 대한 프로그램수익 집계 및 간접원가 배부의 예외 허용에 관한 득실을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관련 원가지침의 개선을 이루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회계 사업의 원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국가회계 프로젝트: 저리용자금 회계처리의 쟁점 및 개선방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GAFSC)는 정부의 저리용자금에 관한 현행의 기준서(이하 「용자 회계처리 지침」)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초안(ED)을 준비하고 있다. 본 내용은 2019년 1분기 뉴스레터(Vol.18)의 ‘국가회계예규 해설: 「용자회계처리지침」’에서 소개한 「용자회계처리지침」에 대한 개선방향을 담은 것이다.

가. 현행 「용자회계처리지침」의 쟁점사항

현행 「용자회계처리지침」은 국가회계실체가 용자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용자보조효과를 정확히 산정하고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한 용자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자금을 ‘저리용자금’이라 한다. 저리용자금의 용자보조효과는 용자원금과 유효이자율로 할인된 회수가능가액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금리보조효과와 대손보조효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용자금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다.

현행 「용자회계처리지침」에 대한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쟁점

- ① 적용 범위를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한 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 ② 저리로 제공되지 않았으나, 대손위험이 높아 용자 자체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가?
- ③ 지침의 목적이 용자를 저리로 제공함에 따른 보조원가를 산출하는 데 있는가?

2) 용자보조효과의 구분 필요성

- ① 「용자회계처리지침」의 적용 범위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정하는 반면, 용자보조효과 측정 시에는 ‘대손보조효과’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가?
- ② 용자보조효과 중 금리보조효과와 대손보조효과를 구분하여 제공해야 하는가?

3) 「용자회계처리지침」에서 사용하는 이자율 개념

- ① 저리를 판단하는 유효이자율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 ② 용자보조효과를 측정할 때 적합한 유효이자율은 무엇인가?
- ③ 용자 실행 이후 계약에 따른 금리변동, 국채이자율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가?

상기 쟁점사항 중 제25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에 상정한 '적용 범위 및 목적'과 '용자보조효과'의 구분, '이자율 변동'을 중심으로 쟁점사항과 그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나. (쟁점 1) 「용자회계처리지침」의 적용 범위 및 목적

「용자회계처리지침」의 목적이 국가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를 측정하는 것이라면 '낮은' 이자율로 실행한 용자 외에도 신용위험이 높은 대상에 제공하는 용자도 「용자회계처리지침」을 적용하여 보조효과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용자보조효과는 '금리보조효과'와 '대손위험효과'를 모두 포괄하는데, 용자보조효과의 측정 대상을 정할 때 '금리보조효과'만을 기준으로 한 저리용자금으로 한정하게 되면, 대손위험이 큰 용자사업은 「용자회계처리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행 지침의 적용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용자금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을, 저리용자금은 「용자회계처리지침」을 적용받음에 따라 국가에서 수행하는 동일한 용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상이(「용자회계처리지침」에서 더 많은 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센터가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 두 가지이다.

- ◆ (1안) 용자 실행 시점의 금리 비교를 통해 저리로 대여한 용자금(저리용자금)에 대해서만 본 지침을 적용(현행 유지)
- ◆ (2안) 정부의 용자사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지침으로 범위 확대

(1안)은 현행과 동일하게 용자 실행 시점의 금리 비교를 통해 '낮은' 이자율로 실행한 용자(저리용자금)에 대해서만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침명을 '저리 「용자회계처리지침」'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저리용자 회계처리'는 민간에서 나타날 수 없는 국가회계실체 특유의 성격에 거래이므로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리용자사업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보조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일반적인 용자 회계처리와 상이한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리가 아닌 일반용자금은 민간의 용자사업과 차이점이 없으므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 지침'의 규정을 통해 회계처리하는 것이 규정의 중복을 피하고 기준 간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다.

다만, 적용 범위를 금리효과에 따른 저리용자금으로 한정하는 경우, 용자보조효과는 '금리보조효과'만 포함하고 '대손보조효과'는 일반용자금과 동일하게 대손상각비로 표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쟁점 2와 관련).

(2안)은 정부의 용자사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지침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용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방안이다. 일반용자금도 저리용자금과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를 기초로 지원 목적을 명시하여 용자를 실행하므로 용자보조효과 산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다시 말해 용자사업상 이자율은 유효이자율보다 다소 높게 실행하였으나, 신용위험을 고려할 경우 시장에서 더욱 높게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없는 대상에게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용자를 진행했다면, 이에 대한 원가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리용자금과 일반용자금을 동일한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 회계처리, 용자보조효과 측정, 공시 등에서 비교 가능성 및 일관성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용자사업의 규모가 저리용자사업보다 크어도 불구하고 정보가 거의 공시되지 않는 현재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

〈2018회계연도 일반용자금 및 저리용자금 현황〉

(단위: 조원)

구분	일반용자금	저리용자금	계
용자금	108.9	87.4	196.3
(용자보조원가충당금)	-	(7.6)	(7.6)
(용자금대손충당금)	(16.3)	-	(16.3)
(용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0.1)	-	(0.1)
합계	92.5	79.8	172.3

출처: 기획재정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8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쟁점 1)에 대한 제25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회계의 특수한 성격이 있는 특수지침이며, 일반용자는 이자율의 보전보다 자금 가용성 측면의 지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의 대부사업과 마찬가지로 1안을 지지(2명)

일반용자금의 규모가 저리용자금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정보의 추가 제공이 필요하고, 정책 실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공시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성과평가 및 향후 정책결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계실무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지침의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안을 지지(5명)

다. (쟁점 2) 용자보조효과를 금리보조효과와 대손보조효과로 구분

현행 「용자회계처리지침」에서는 회수 가능액(대손평가를 포함한)의 현재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이를 용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금리보조효과와 대손보조효과를 함께 산출하는 것으로 정보 제공에 제약이 존재하며, 대손 부분까지 현재가치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용자금과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용자보조효과를 금리보조효과와 대손보조효과로 구분

용자보조효과를 금리보조효과와 대손보조효과로 구분하고, 용자 실행 시점에 명목금액과 조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차액을 금리보조효과로 산출한 후, 대손을 평가하여 대손보조효과를 산출한다. 매년 수행하는 평가는 대손보조효과에 한정하여 평가하며, 금리보조효과가 금리 실행 시점에 고정됨으로써 국가회계실체가 용자 실행 시점에 예정된 손해(보조원가)를 측정하여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하나로 통합(용자보조비용)되어 있는 계정과목을 금리보조효과는 금리보조비용, 대손보조효과는 대손상각비로 구분하고 대손보조효과는 일반용자금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쟁점 2)에 대한 제25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실행에 다른 효과를 발생원천(금리보조, 대손보조)에 따라 측정·공시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정책결정에 보다 유용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최초 의도한 정책사업의 효과와 사업 수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손위험의 효과를 구분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용자 실행에 따른 비용을 금리보조효과와 대손보조효과로 구분하는 것에는 전체적으로 동의하였다. 다만, 실무적으로 비용 대비 효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라. (쟁점 3) 이자율 변동의 영향 반영

현행 「용자회계처리지침」상 일반용자금과 저리용자금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자율' 하나이고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변동금리 조건의 용자가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유효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등의 회계처리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금리보조효과는 용자 실행 시점에 인식하고 평가를 수행하지 않으며, 후속 평가는 대손보조효과에만 국한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변동금리 조건에 따른 금리 상승, 조기상환 등 평가 외 변동이 있는 경우는 '용자금의 조정'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며, 이에 따라 금리보조효과가 음(-)의 값으로 나타날 경우(금리가 용자 실행 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0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저리 「용자회계처리지침」은 저리로 용자를 실행함에 따라 국가회계실체의 약속된 손해(보조효과)를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효이자율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에도 약속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회계실체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쟁점 3)에 대한 제25차 국회회계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리용자금의 금리보조효과가 음(-)의 값일 경우 0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음(-)의 값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음(-)의 값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논거로는 금리보조효과가 음(-)인 것은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사업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라는 것이다.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상기 서술한 이슈 등을 종합하여 '저리용자 회계처리지침' 개정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계획이며, 이후 해당 보고서에 담긴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적인 의견 형성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06

센터 동향

1 『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재정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알기 쉬운 재정통계』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올해에는 이에 대한 개정판인 『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를 발간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Q&A를 수록하여 혼돈하기 쉬운 개념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우리나라 재정통계 개편과정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GFSM 2014 도입이 미칠 주요 변화 및 2017년 재정통계 산출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수록하여 우리나라 재정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도록 구성하였다.



『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는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통계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쉽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4월 22일(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8년 사업평가의 결과보고 및 2019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평가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 및 2019년 사업추진 계획」 안건으로 제3차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인 주인기 교수(연세대, IFAC 회장), 이장희 교수(충북대학교), 전중열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도진 교수(중앙대학교, 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센터장)가 참석하였다.

2018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도의 자체평가계획 및 센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참고로 2018년도 센터사업 평가결과는 우수(A) 평가를 받았으며, 자체평가 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자체평가지표를 설정하는 등 자체평가를 충실히 추진한 부분이 높게 평가되었다. 다만, 사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다소 미흡한 점과 회계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체평가위원회에서 2019년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논의되었다. 국가회계교육사업 중 국가회계의 정책적 활용 시범(pilot)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국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정보 및 지식공유”를 주요 주제(Theme)로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 계획 중인 한·스위스 세미나를 적극 활용하라는 제안이 있었다. 이 밖에도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홍보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상자에게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경로, 과정 등을 체계화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2019년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센터의 수행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평가위원회(4.22.), 서울지방조달청 3층 회의실)

3 2019회계연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제1,2차 교육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9년도 제1, 2차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서울, 6.19~21), 대전컨벤션센터(6.26~28)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국가회계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국가회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교육은 차수별로 국가회계이론 과정 2일, 국가회계실무 과정 1일 등 총 3일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교육에서는 이론과정 67명 실무과정 76명이 수료하였고, 대전교육에서는 이론과정 69명 실무과정 69명이 수료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가회계전문교육(2차, 6.26.), 대전컨벤션센터 회의실〉

국가회계이론 과정 1일차에서는 성신회계법인 김상노 회계사(2차, 대전), 진회계법인 이재혁 회계사가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박성동 국고국장 이 국가회계제도의 발생과 개념에 대해 예산과 비교하면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2일차에서는 이정지유회계법인 허웅 회계사가 세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결산조정과 발생주의에 대한 내용을 종합사례 연습을 통해 설명하여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국가회계실무 과정 제1차 서울강의에서는 센터 최금주 회계사가 수입·지출 업무의 유형별 오류사례 및 해결방안에 대해 실무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고, 제2차 대전강의에서는 센터 임종권 회계사가 국유·물품 업무의 유형별 오류사례 및 해결방안을 감사원 지적사례와 함께 설명하였다. 또한 제1차, 제2차 오후 강의에서는 센터 현지용 회계사가 ‘국가재무제표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회계 업무 담당자들이 국가재무제표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019년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제1차 서울지역 교육을 시작으로 제12차 세종지역 교육까지 6개월(6~11월)에 걸쳐 8개 도시(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제주, 원주, 세종)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과정 안내 및 수강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http://edu.kip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세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상단 「교육안내」 메뉴의 「공지사항」 참조).

4 2019회계연도 국가회계전문교육 교재 개발 검수회의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9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교재 개발 검수회의를 5월 22일 서울지방조달청 10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국가회계이론’ 과정 강사이며 교재 작성자인 김상노 회계사(한길회계법인), 이재혁 회계사(진회계법인), 허웅 회계사(이정지유회계법인)가 참석하여 교육교재 수정 내용을 공유하였고, 이에 대해 센터 결산교육팀과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차승원 사무관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9년도 ‘국가회계이론’ 과정 교재는 작년 교육 수강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수강생들이 쉽게 흥미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제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되었다. 이번 검수회의의 결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시작되는 6월 이전까지 교재 추가 수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회계 전문교육 교재 개발 검수 회의(6.22.), 서울지방조달청 10층 중회의실〉

5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9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에 앞서 강사들의 강의 스킬 향상을 위한 「국가회계 전문교육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5월 23일에 본원 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엑스퍼트컨설팅의 김선애 원장을 섭외하여 2시간 동안 ‘설득력 있는 강의 전달을 위한 스킬’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센터를 비롯한 총 26명이 참석하였다.

본 세미나를 통해 성인교육의 트렌드, 강사의 자세 및 말투, 강의 동선, 다양한 강의 스킬 기법, 질문 및 답변 방법 등의 다양한 강의 노하우가 전달되었으며, 특히 강의 진행에 있어서 강사의 영향력과 강사 개인 능력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더 강조되었다. 본 세미나를 통해 국가회계 전문교육 내부강사들의 강의 역량이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회계 전문교육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6.23.), 본원 8층 중회의실〉

6 위탁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재정 관련 정책 의사결정자에게 국가회계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교육하고자, 2018년 10월에 「국가회계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 용역을 위탁하였다.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종교재가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5월 8일(수) 한국재정정보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종보고회는 교재 개발자인 허용 회계사(이정지유희회계법인), 김상노 회계사(한길회계법인)의 보고에 이어 외부자문위원인 이은경·안옥진 예산분석관(국회 예산정책처), 이남희·차승원 사무관(기획재정부)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 현지용 팀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숫자 업데이트, 예산결산 정보 대비 프로그램원가 정보의 특성 이해 가능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되었으며, 최종교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국가회계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첫 번째 교육교재는 착수보고회 때 의견을 토대로 국가회계를 이 해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본 교재를 활용한 교육은 향후 ‘국가회계의 정책적 활용 Pilot 과정’을 통해 1회(6시간) 실시될 예정이다.

1 한국회계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운영

가. 개요

- 일시: 2019.5.18(토) 14:30~15:14
- 장소: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511호
- 좌장: 배기수(충북대학교 교수)

나. 발표 및 토론결과 요약

- (주제1)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42), 사회보장급여
(임정혁 선임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주요 발표내용]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가 최근 발표한 IPSAS 42, ‘사회보장급여(Social Benefits)’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해 소개
 - IPSAS 42는 사회보장급여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부채의 인식 방법과 공시사항을 일반접근법과 보험접근법으로 나누어 규정
 - IPSASB는 IPSAS 42를 전 세계 공공부문 실체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 확보를 기대하며, 사후 이행검토를 통해 IPSAS 42를 개선할 계획
- 우리의 국가회계기준 또한 이러한 IPSASB의 개선방향에 주목하여 대응할 필요

[주요 토론내용]

- (토론) 현행 국가회계기준의 지급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했을 때 부채 금액과 IPSAS 42의 일반 접근법을 적용한 경우 부채 금액에는 큰 차이 발생 확인 필요

- (답변) IPSAS 42는 차기 급여 즉 매월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라면 다음 달에 지급해야 할 사회보장급여 지급 예상액을 부채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므로 현행의 지급기일 도래 기준의 부채 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
- (토론) IPSAS 42의 일반접근법에서 말하는 ‘차기 급여’가 정부가 익년에 지급해야 할 사회보장급여 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현행 지급기일 도래 기준과 금액적 차이가 200조원 이상으로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
- (답변) IPSAS 42는 ‘차기’의 의미를 월 혹은 분기 등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주기로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차기 급여를 수급할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주기와 현재 의무의 발생 여부를 연관 지어 설명



〈한국회계정보학회(5.18.),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511호〉

□ (주제2) 국가회계정보의 의미와 정책적 활용
(허웅 회계사, 이정지울회계법인)

[주요 발표내용]

- 기존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에서 얻을 수 있는 회계정보는 예산과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통제 기능이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최근 이슈인 세대 간 활용 및 균형과 관련한 정보의 산출은 쉽지 않음

- 반면, 국가재무제표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균형에 대한 정보를 내포할 수 있음
 - 재정운영표는 국가의 정책이 현재 세대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부담 효과, 정책의 성과평가 시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재정상태표의 경우 세대 간 재정건전의 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부와 정책 의사결정의 잠재력 등 국가의 역량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한국회계정보학회(5.18.),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511호〉

- (주제3) 국회회계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 분석
(엄기중 연구원,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주요 발표내용]

- 발생주의에 의해 산출된 국가재무 정보는 그 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제한됨
- 국회회계에서 발생주의정보와 현금주의 정보의 차이 분석을 통해 발생주의 정보의 차별적 정보력을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발생주의가 도입된 2011년 이후 현금주의 지출과 발생주의 비용은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연간 약 47조~54조원, 용자 지출로 인하여 연간 약 30조~37조원, 발생계정으로 인하여 연간 약 40조~98조원 등의 차이가 발생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의 2015년 사례를 보면, 현금주의 지출은 약 207조원인 반면, 발생주의 비용은 약 25조원으로 무려 182조원의 차이가 발생
- 정부는 재정지출 관련 예산 편성 등 정책결정 시 현행과 같이 현금주의 지출규모뿐만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함
- 발생주의는 향후 지출 가능성이 있는 부채까지 인식함으로써, 미래 재정부담능력을 예측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 정보는 재정건전성 관리와 재정계획 수립에 필수적임



〈한국회계정보학회(5.18.),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511호〉

2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및 보고 세미나

가. 개요

- 일 시: 2019.6.14(금) 14:00~16:00
- 장 소: 대우재단빌딩 대강의장
- 참석자: 공공기관, 학계 및 유관기관 등

〈주제발표 및 토론〉

[사 회] 엄기중 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 회]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과 개선방향

[개 회 사] 김재진 부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조발표] 정도진 교수(중앙대학교)

[주제발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발표1] 김석규 팀장(한국도로공사 회계팀)

[발표2] 하상수 부장(한국남부발전 일자리전략부)

[발표3] 임종순 부장(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부)

[발표4] 박제우 차장(한국남동발전 사회가치혁신부)

[종합토론]

[좌 장] 정도진 교수(중앙대학교)

[토 론] 박한준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윤진 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성환 교수(한밭대학교), 강평경 교수(서강대학교), 김종현 교수(한양대학교),
정아름 박사(사회적가치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9년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 7층 대강의장에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회계정보학회 정도진 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와 기관별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은 정도진 교수의 사회로, 박윤진 팀장(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한준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성환 교수(한밭대학교), 김종현 교수(한양대학교), 강평경 교수(서강대학교), 정아름 박사(사회적가치연구원)가 참여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및 보고 세미나(6.14.), 대우재단빌딩 대강의장〉

나. 발표 및 토론결과 요약

[기조발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과 개선방향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배경

-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제고
 - 민간기업의 사회적 가치 활동은 비즈니스를 변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공공기관은 공익적 결과를 추구함

-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 필요성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보 요구
 - 민간에서는 CSR, CSV, Social Value 등의 측면에서 오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관련한 부분은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 공공기관과 일반인들의 사회적 가치 인식
 - 사회적 가치의 측정 필요성에 대해 일반인은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반면, 공공기관은 '아니다'라는 응답이 많아 일반인과 공공기관 응답자 간 간극이 발생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 효과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계량화 효과
 - 국민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할 필요
 - 계량화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기관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및 보고 세미나(6.14.), 대우재단빌딩 대강의장〉

[주제발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 (한국도로공사) 결산서 기반 사회적 가치 측정

- 사회적 가치 측정 배경
 -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강조하는 국정운영 기조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과 성과를 반영하는 정부경영평가 대응 목적
 - 비계량적 요소를 배제한 객관적인 사회가치 성과 측정과 공사의 역할 분석 및 진단을 통한 계량적 성과관리 목적
- 2018년 사회적 가치 성과측정 결과
 - 공공구매, 국민서비스, 가격 할인, 일자리, 사고예방, 자연보호 등의 사회적 가치 영역의 손익 계산서상 항목을 집계한 결과 3조 6,121억원으로 집계됨
 - (공공구매) 중소기업 등 공공구매 금액 등 1조 1,602억원으로 2017년 대비 6,413억원 증가
 - (국민서비스) 적자, BC 1 이하 노선의 건설비 등 1조 3,883억원으로 2017년 대비 3,112억원 감소
 - (가격 할인) PSO, 주유소 할인, 단말기 지원 등 3,895억원으로 2017년 대비 534억원 증가
 - (일자리) 사회적 약자 의무고용 초과 임금 등 2018년 152억원으로 2017년 대비 107억원 증가
 - (사고예방) 교통안전연구, 캠페인 등 비용 등 125억원으로 2017년 대비 17억원 감소
 - (자연보호) 생태도로, 로드킬 등 투자비 등 51억원으로 2017년 대비 30억원 증가

□ (한국남부발전) 남부발전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와 측정 및 한계

- 사회적 가치 추진
 - 사업역량 활용과 지속가능성 추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 열린혁신(외부 전문가 참여), 플랫폼 전략(타 기관 참여), 수요자 맞춤 전략 추구
- 사회적 가치 측정방안
 - 사회적 가치 측정 프레임워크: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영향
 -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고도화 중

K-SVI: Social Value Index, 사회적 가치 지수

- 남부발전에서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증장기 목표 대비 현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K-DI: KOSPO Decent work Index, KOSPO 일자리 지수

- 남부발전에서 창출하는 민간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지(Decent Work) 일자리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 사회적 가치 항목 중 중요도 및 고유 사업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핵심 및 기본지표로 구분
- 핵심·기본지표별 KPI 및 증장기 성과목표 설정(대외평가, 글로벌 기준 등 반영)
- 핵심·기본지표에 가중치 부여하여 사회적 가치 지수 선정
- 2030년 목표를 100점으로 정하고, 지표별 달성 수준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등급 산정

□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가치 체계, 측정결과, 발전 논의사항

• 사회적 가치 정의

-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성과는 사업기반 사회성과, 경제적 사회성과, 사회공헌 사회성으로 구분
- (사업기반 기업 사회적 성과) 활동 전 과정에서 제품, 서비스, 가치사슬, 조직 운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여 창출되는 성과
- (경제적 사회성과) 공사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구성원/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자원이 전환되어 창출되는 사회성과
- (사회공헌 사회성과) 공사의 재무성과와 기업의 유·무형자산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

• 사회적 가치 측정결과

- 경영평가지표, 전략과제 SK 측정지표, 사회가치 100대 과제 등의 지표 개발을 통한 화폐화 방식으로 측정
-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지원, 안전유지, 환경보전, 상생협력, 노동존중, 사회공헌 영역에서 한국 가스공사의 총 사회성과는 약 6,379억원으로 집계

□ (한국남동발전) 사회적 성과 평가모델

•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

- 단위 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사회적 가치를 합산하여 사회적 성과 평가

-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보수적으로 측정하여 사회적 성과 평가
- 단위 사업의 사회적 성과 측정의 KPI로 사회적 투자 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활용
- 시범사업 적용
 - 남동발전의 혁신과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선정
 - 기존 경제성 결과와 비교하여 사회적 성과를 도출
- SROI 산출방안
 - (SROI 산출) “(경제적 가치 + 사회적 가치) / 투자비”로 산출하여 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현재가치화
 - (투자비) 지분을 고려한 투자비 산출
 - (경제적 가치) 미래 배당을 집계하여 순현금흐름 산출
 - (사회적 가치) 불용자원의 활용, 대기오염물질 저감, 일자리 창출 효과, 공동체 회복 효과, 안전관리 효과, 조세 기여분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산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및 보고 세미나(6.14.), 대우재단빌딩 대강의장〉

[종합토론]

- (좌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큰 틀에서 설명 바람
- (답변_박성환)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으며, 공공기관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함
- 사회적 가치는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공익적 결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불경기일 수록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사회적 가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위한 자원 투입은 보이지 않은 가치를 만들어내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좌장) 공공기관은 이미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은 앞으로 어떠한 공익적 측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지 확인을 부탁 드림
- (답변_박한준)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은 그 사업자체가 공공정책 목표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CSR과 구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공익적 결과를 사회적 성과로서 재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큰 고민일 것임
첫째로, 측정의 관점에서는 b/c ratio와 SROI에서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함께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비용적 측면에서 측정화도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의 사업들이 대부분 독점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사업 수행 구조에서 지대추구 행위가 차단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됨
- (좌장)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위해 가중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측정의 모호성, 일관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의견 제시를 바람
- (답변_강평경) 지금까지 사회적 가치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한계가 있었음. 최근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이 평가의 영역으로 들어옴.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함. 이러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지고 사회적 가치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음

- (좌장) 민간기업인 SK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치를 어떠한 이유에서 만들고 있고, 어떤 단계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림
- (답변_정아름) SK의 DBL(Double Bottom Line)경영을 추구하고 있음. DBL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구성됨.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3대 측정원칙'이 있음. 첫째, 이해관계자의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측정하는 이해관계자 편익/비용 기준 회계원칙이며, 둘째로 합리적 수준의 시장가격을 추정하여 측정하는 준거시장 기준 마지막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보수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있음 SK의 경우 사회적 가치는 output을 넘어 outcome 단계까지 측정하고 있음.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때 측정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과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것이 가치인가 여부를 정의내리는 선행단계가 중요한 단계라 생각됨
- (좌장) 사회적 가치의 평가와 측정을 위한 회계기준 마련이 논의 중임. 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기준서 제정 방향을 설명 바람
- (답변_김종현) 먼저 사회적 가치를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명확하게 정의해야 함. 또한 현재의 회계기준에 있는 개념적 틀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정의 및 인식 요건을 차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식별해야 함. 이를 통해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여 사회성과 자산, 사회성과 부채 등으로 나눠 측정하고 재무제표에 표시될 수 있어야 함
- (좌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사회적 가치 연구계획 및 방향은 무엇인지 소개 바람
- (답변_박윤진) 첫째로, 4개 기관의 발표에서 공통점으로 느껴지는 어려운 사항은 사회적 가치의 측정 및 보고와 관련한 모범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하고 이를 보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에 대한 표준화된 사회적 가치 측정방안 마련 등 사회적 가치의 측정 및 보고와 관련된 모범규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임
둘째로, 당초 사업별 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된 구분회계 또한 활용성이 많지 않은 상황처럼 사회적 가치도 이러한 문제가 우려됨. 따라서 사회적 가치 측정 초기에 사회적 가치 정보를 통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및 보고 세미나(6.14.), 대우재단빌딩 대강의장〉

08

2019년 2분기 IPSASB 정례회의 출장 후기

이번 출장의 목적은 IPSASB(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의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IPSAS(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의 제·개정 쟁점과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회계기준과 관련된 시사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가. 출장 개요

- 출장기간: 2019.6.17(월)~23(일)
- 출장지: 캐나다 토론토, 캐나다 공인회계사협회
- 출장자: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직무대리, 김선재 특수전문직 3급, 임정혁 선임연구원
- 안건: 수익, 비교환비용, 리스 등

〈세부 일정〉

일자	주제	내용	시간
6/18(화)	개회사	참석자 확인, 과거 회의결과 및 활동현황 발표, EPSAS 업데이트, IASB 업무계획의 요약 등	09:00 ~ 09:30
	커뮤니케이션 활동 보고	Francesco Capalbo (이탈리아 위원) 구두 보고	09:30 ~ 10:00
	조직 관리	PIC(공익위원회) 관련 구두 보고	10:00 ~ 10:30
	업무계획 보고	업무계획 관련 이슈 요약	10:30 ~ 10:40
	공공부문 특유 금융상품	적용지침(AG) 승인	11:00 ~ 15:10
	개선과제	공개초안(ED) 승인	15:30 ~ 17:00
6/19(수)	리스	이슈 논의	09:00 ~ 14:10
	사회기반시설	이슈 논의	14:10 ~ 15:10
	유산	이슈 논의	15:30 ~ 17:00
6/20(목)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	2019년 3월 이후 업무 업데이트, 이슈 논의(IPSAS 23 개정사항)	09:00 ~ 15:10
	보조금과 이전(비용)	이슈 논의	15:30 ~ 17:00

일자	주제	내용	시간
6/21(금)	승인 항목	공공부문 특유 금융상품 & 개선과제	09:00 ~ 10:00
	공공부문 기준 제정자 포럼	리서치 토픽 접근법, 일정 및 과정 논의	10:00 ~ 12:30
	의결사항 검토	의결사항 및 지시사항 검토	13:30 ~ 14:15
	향후 업무계획 보고	업무계획 관련 이슈 요약	14:15 ~ 14:45
	폐회사	회의결과 논의	15:00 ~ 16:00

나. 주요 내용 요약

다음은 2분기 IPSASB 정례회의의 주요 안건인 수익과 비교환비용, 리스 안건의 내용과 의결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수익(Revenue)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공공부문 수익거래의 회계처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있다. 현행의 수익 회계처리 기준은 해당 수익거래가 교환거래인지 아니면 비교환거래인지 여부, 즉 거래당사자 간에 동등한 가치를 직접 교환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익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경우 시장이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시장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재무제표 작성자 입장에서 실제로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PSASB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 개념을 도입하여 수익거래를 통해 수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익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원칙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개발하여 왔다. 이 방안의 핵심은 수행의무를 부담하는 수익거래는 IFRS 15의 수행의무 접근법을 참고하여 개발한 5단계 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Public Sector 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 이하 ‘PSPOA’)을 적용하고, 이외의 수익거래는 개념체계 등을 고려하여 다듬은 일반적인 수익인식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2019년 6월 정례회의에서는 수행의무를 부담하는 수익거래에 적용할 공개초안인 ED 70, ‘Revenue with Performance Obligations’의 일부 문단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수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수익거래에 적용할 일반적인 수익인식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구분		적용 대상 IPSAS(안)
수익거래	수행의무 있음	ED 70,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Revenue with Performance Obligations)
	수행의무 없음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Revenue without Performance Obligations)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과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의결사항
<p>■ 수익(Revenue): ED 70,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Revenue with Performance Obligations)</p>		
<p>문단 8(e)의 조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70의 문단 8은 수익거래에 ED 70을 적용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문단 8(e)은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을 것을 요구 공공부문의 경우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강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전력, 물)가 있으므로 문단 8(e)을 삭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수익 프로젝트 T/F는 검토 결과 문단 8(e)을 그대로 유지하되,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약정의 대가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 (예) 청구된 대가금액, 회수된 대가금액, 미회수 대가금액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단 8(e)을 유지하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추가 공시사항을 요구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강제적 거래에도 ED 70을 적용)
<p>일부 용어 정의 삭제 여부 (Binding Arrangement Asset 및 Binding Arrangement Liabil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70의 문단 7은 'binding arrangement asset'과 'binding arrangement liability'를 각각 대가를 수취할 권리,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할 의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IFRS 15의 계약자산과 계약부채에 대응되는 용어임 3월 회의에서 '자산', '부채'의 정의가 이미 있으므로 이들 용어의 별도 정의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검토결과, T/F는 'binding arrangement asset'과 'binding arrangement liability'의 용어 정의를 존치할 것을 제안 'binding arrangement asset'는 수행의무 이행에 따라 대가를 수취할 권리이고 'receivable'은 대가를 수취할 무조건적인 권리이므로 성격이 상이한 자산이기 때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nding arrangement asset'과 'binding arrangement liability'의 용어 정의를 존치할 것

세부 안건	주요 제언사항	의결사항								
<p>■ 수익(Revenue):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Revenue without Performance Obligations)</p>										
<p>수익 인식 원칙의 대안 (Revenue Opt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거래에 적용할 수익 인식 회계 처리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익거래를 분류 <table border="1" data-bbox="414 586 937 1093"> <thead> <tr> <th colspan="2">수익거래의 유형(임의 구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14 632 481 771">(a) 유형</td> <td data-bbox="481 632 937 771"> <p>자원 사용에 관한 조건 ○ + 집행 가능성 × : 자원 사용에 관한 조건(term)이 없어 (위반 시) 강제집행 가능성이 없는 거래 (예) 조세, 벌금, 일반적인 기부금</p> </td> </tr> <tr> <td data-bbox="414 771 481 916">(b) 유형</td> <td data-bbox="481 771 937 916"> <p>자원 사용에 관한 약정 ○ + 집행 가능성 × : 자원 사용에 관한 조건(term)은 있으나 위반 시 강제집행 가능성은 없는 거래 (예) 특정 사용목적을 명시한 기부금</p> </td> </tr> <tr> <td data-bbox="414 916 481 1093">(c) 유형</td> <td data-bbox="481 916 937 1093"> <p>자원 사용에 관한 약정 ○ + 집행 가능성 ○ : 자원 사용에 관한 조건(term)이 있고 위반 시 강제집행 가능성도 있는 거래 (예) 연구보조금(지적재산권을 반환하지 않음), 수질 향상에 사용할 용도로 수취한 자금</p>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T/F는 3개 수익거래 유형에 각각에 대해 적절한 수익 인식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유형 ⇒ 즉시 수익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2월 회의 의결사항 (b) 유형 ⇒ 즉시 수익 인식하되,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자원 사용에 관한 조건 내용을 표시 및 공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2월 회의 의결사항 (c) 유형 ⇒ 다음 중 관점 1을 지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점 1) 즉시 수익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수령자는 약정대로 자원을 사용하면 미래의 자원 회생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약정 체결 시점에는 부채를 인식할 수 없음 (관점 2) 수익 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 또는 기타의무를 통해 수익을 이연하여 인식해야 한다는 관점이며, 이 경우 수익의 이연방법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수익거래의 유형(임의 구분)		(a) 유형	<p>자원 사용에 관한 조건 ○ + 집행 가능성 × : 자원 사용에 관한 조건(term)이 없어 (위반 시) 강제집행 가능성이 없는 거래 (예) 조세, 벌금, 일반적인 기부금</p>	(b) 유형	<p>자원 사용에 관한 약정 ○ + 집행 가능성 × : 자원 사용에 관한 조건(term)은 있으나 위반 시 강제집행 가능성은 없는 거래 (예) 특정 사용목적을 명시한 기부금</p>	(c) 유형	<p>자원 사용에 관한 약정 ○ + 집행 가능성 ○ : 자원 사용에 관한 조건(term)이 있고 위반 시 강제집행 가능성도 있는 거래 (예) 연구보조금(지적재산권을 반환하지 않음), 수질 향상에 사용할 용도로 수취한 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속력 있는 약정이 없어 집행이 불가능한 거래의 경우 수취 가능한 때(receivable) 수익으로 인식함 조건 위반 시 집행 가능한 거래의 경우 약정 개시 시점에 부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취 가능한 때(receivable) 수익으로 인식함 현재의무와 수행의무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개발하여 차기 회의 전에 제출할 것을 지시
	수익거래의 유형(임의 구분)									
(a) 유형	<p>자원 사용에 관한 조건 ○ + 집행 가능성 × : 자원 사용에 관한 조건(term)이 없어 (위반 시) 강제집행 가능성이 없는 거래 (예) 조세, 벌금, 일반적인 기부금</p>									
(b) 유형	<p>자원 사용에 관한 약정 ○ + 집행 가능성 × : 자원 사용에 관한 조건(term)은 있으나 위반 시 강제집행 가능성은 없는 거래 (예) 특정 사용목적을 명시한 기부금</p>									
(c) 유형	<p>자원 사용에 관한 약정 ○ + 집행 가능성 ○ : 자원 사용에 관한 조건(term)이 있고 위반 시 강제집행 가능성도 있는 거래 (예) 연구보조금(지적재산권을 반환하지 않음), 수질 향상에 사용할 용도로 수취한 자금</p>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의결사항
자본보조금 (Capital Gr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ital Grants는 구속력 있는 약정에 따라 제공되지만 대상 자산을 자원 제공자나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수행의무가 없어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의 적용 범위에 해당됨 • Staff는 Capital Grants의 수익 회계처리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즉시 수익 인식 (b) 이연하여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b-1) 건설기간에 걸쳐 인식 (b-2) 약정상의 요구사항 달성 정도에 따라 인식 (b-3)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인식 • Staff는 이 중 (b-2)와 (b-1)을 결합한 방법인 약정상의 요구사항에 따라 인식하되, 요구사항이 없으면 건설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방법을 추천 * Capital Grants의 경우 구속력 있는 약정에서 비롯되며, 자산을 취득·건설하라는 요구사항은 실질적으로 수행의무로 볼 수 있기 때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무와 수행의무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고려하여 자본보조금에 관한 안건을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

□ 비교환비용(Non-exchange Expenses): Grants and Transfers

수익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추진 중인 비교환비용 프로젝트는 사회보장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비교환비용에 적용할 새로운 비용 기준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PSASB는 이 비교환비용 프로젝트를 통해 비교환비용 중 집합적 서비스(collective services), 개별적 서비스(individual services), 응급구호(emergency relief)를 다루는 공개초안(ED 67)을 2019년 1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 잔여 비교환비용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개초안(ED 72)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ED 72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비용거래의 성격이 무엇이고, 이러한 비용거래들을 지칭할 수 있는 용어는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다음 표는 주요 논의사항과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의결사항
<p>■ 보조금과 재원이 (GRANTS AND TRANSFERS: EXPENSE)</p>		
<p>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Scope and Definit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3월 회의에서 IPSASB는 ED 72의 적용 범위에 자원 제공자가 자원수령자에게 자원 제공 대가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받지 않는 거래만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 • Staff는 GFS 용어와의 불필요한 차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 2014 GFSM 등 통계지침을 참고하여 기존의 'Grants', 'Contributions', 'Other Transfers' 중 ED 72의 적용 대상 거래를 지칭할 용어를 검토 • 검토결과, 3개 용어 중 "Transfer"의 경우 GFSM에서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 간에 재화·서비스·자산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어 ED 72의 적용 범위와 대체적으로 일치함 • 다만, Staff는 GFS의 'Transfer'를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하면 IPSAS 23과의 상충 문제가 있으므로 'Tranfer Expense'와 'Tranfer Revenue'를 신설하여 사용할 것 등을 제안함 • 2019년 3월 회의에서 IPSASB는 ED 72의 적용 범위에 특히 research grants가 포함되는지 여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 • Staff는 다음과 같이 research grants의 조건(term)상 자원 제공자에게 연구결과(지적재산권)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ED 72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연구결과(지적재산권)를 자원 제공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조건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72 적용 범위에 포함 (자원 제공자가 대가로 제공받는 자산이 없음) (b) 연구결과(지적재산권)를 자원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조건이나, 약정상 연구결과가 공공저작물(public domain)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72 적용 범위에 포함 (공공저작물은 자원 제공자의 자산이 아니므로 자원 제공자가 대가로 제공받는 자산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FS의 "transfers"의 정의에 따라 ED 72의 적용 범위를 설정함 • 이해관계자에게 ED 72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도표를 개선할 것을 지시 • "transfer expense" 용어를 도입하되, 해당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속 파악할 것을 지시 • 자원 제공자에게 연구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연구보조금만 ED 72를 적용함 • ED 72에 연구보조금 관련 적용 사례를 추가할 것을 지시

세부 안건	주요 제안사항	의결사항				
<p>Subsidies or Premiums (공정가치 초과 지급분)</p>	<p>(c) 공공저작물이 아닌 연구결과(지적재산권)를 자원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조건인 경우</p> <p>⇒ ED 72 적용하지 않음 (대가가 있는 상업적 거래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FS 용어와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financial support'를 사용함 • 'financial support'를 명백하게 식별 가능한 경우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이외의 경우 PSPOA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개발할 것을 지시 • financial support에 관한 호주 AASB의 회계처리 방법을 검토하여 financial support에 관한 지침을 개발할 것을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실체는 정책적 목적으로 제공받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정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Subsidies, Premiums는 이렇게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를 의미 • Staff는 Subsidies, Premiums의 관련 지침 개발의 필요성 및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p style="text-align: center;">대안별 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data-bbox="401 870 473 1083"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1안)</td> <td data-bbox="473 870 950 1083"> <p>현행 지침 적용(별도 지침 개발 불필요) : IPSAS 19,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손실부담계약 규정을 적용하여 손실부담계약이 될 때 Subsidies, Premiums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대개 약정 개시시점에 인식)</p> </td> </tr> <tr> <td data-bbox="401 1083 473 1262" style="text-align: center;">(2안)</td> <td data-bbox="473 1083 950 1262"> <p>별도 지침 개발 : 1안처럼 IPSAS 19를 적용하여 손실부담계약이 될 때 Subsidies, Premiums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되, 두 요소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지침 개발</p> </td> </tr> <tr> <td data-bbox="401 1262 473 1691" style="text-align: center;">(3안)</td> <td data-bbox="473 1262 950 1691"> <p>PSPOA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 : 전체 대가에서 Subsidies, Premiums를 분리하지 않고 공공부문수행의무접근법(PSPOA)에 따라 나누어 비용으로 인식</p>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1안과 2안의 경우 공공부문 특성상 공정가치 측정이 쉽지 않아 재무제표 작성자가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손실부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3안을 추천함 • 다만, GFS에서 이미 Subsidies, Premiums를 다른 뜻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제3의 용어인 'financial support'로 지칭할 것을 제안함 		(1안)	<p>현행 지침 적용(별도 지침 개발 불필요) : IPSAS 19,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손실부담계약 규정을 적용하여 손실부담계약이 될 때 Subsidies, Premiums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대개 약정 개시시점에 인식)</p>	(2안)	<p>별도 지침 개발 : 1안처럼 IPSAS 19를 적용하여 손실부담계약이 될 때 Subsidies, Premiums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되, 두 요소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지침 개발</p>
(1안)	<p>현행 지침 적용(별도 지침 개발 불필요) : IPSAS 19,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손실부담계약 규정을 적용하여 손실부담계약이 될 때 Subsidies, Premiums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대개 약정 개시시점에 인식)</p>					
(2안)	<p>별도 지침 개발 : 1안처럼 IPSAS 19를 적용하여 손실부담계약이 될 때 Subsidies, Premiums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되, 두 요소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지침 개발</p>					
(3안)	<p>PSPOA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 : 전체 대가에서 Subsidies, Premiums를 분리하지 않고 공공부문수행의무접근법(PSPOA)에 따라 나누어 비용으로 인식</p>					

□ 리스(leases)

리스 프로젝트는 IFRS 16, '리스'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현행 리스 기준서인 IPSAS 13이 가진 할인리스(concessionary lease) 규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IPSASB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IPSASB는 2017년 12월에 새로운 리스 기준서의 공개초안인 ED 64, 'leases'를 발표하였다. ED 64는 IFRS 16과 달리 리스 이용자뿐 아니라 리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사용권 모형(right-of-use model)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리스 이용자 회계처리의 경우 뚜렷한 찬성 의견이 나타났지만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의 경우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6월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ED 64처럼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를 IFRS 16과 다르게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IPSASB 위원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회계 기준위원회(GASB)¹⁾의 David Bean 국장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²⁾ 자문위원인 Kimberley Crook 뉴질랜드 회계기준위원회(NZASB)³⁾ 의장을 초빙하여 두 회계기준의 제정 논거에 관한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참고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 16은 리스 제공자에 대해 기존의 '위험-보상 모형(risks and rewards model)'의 적용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미국 지방정부회계기준인 제87호 리스 기준서는 ED 64와 유사하게 리스 제공자에 대해 사용권 모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발표자	주요 발표 내용
① David Bean (GASB Direc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리스 제공자 역시 사용권 모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음(IPSASB의 현재 입장과 유사) • 사용권 모형에 따르면 리스 제공자는 기초자산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므로 기초자산을 계속하여 재정상태표에 인식해야 함 • 이와 별개로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료를 수취할 권리를 통제하므로 리스자산(리스채권)도 인식해야 함 • 또한 리스 이용자에게 사용권을 제공함에 따라 기초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할 현재의무를 부담하므로 리스부채(선수수익)를 인식해야 함

1)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2)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3) New Zealand Accounting Standards Board

발표자	주요 발표 내용
<p>② Kimberley Crook (IASB Consultant, NZASB Chai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SB는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에 대해 종전의 '위험-보상 모형(risks and rewards model)'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는 IPSASB와 GASB의 입장과 다름 • IASB가 종전의 '위험-보상 모형(risks and rewards model)'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AS 17의 리스 제공자 회계모형은 이해하기 쉬움 (2) 현재 재무제표 이용자의 대부분은 리스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리스 제공자의 재무제표를 조정하지 않음 (3) 기초자산을 다루는 리스 이용자와 리스 제공자를 함께 분석하지 않으므로 리스 이용자와 리스 제공자의 회계모형이 반드시 대칭적일 필요는 없음 (4) IAS 17의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지 않으므로 리스 이용자 회계처리가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09

공지사항

1 2019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우리 센터에서는 2019년도 수행할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과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 받은 주제는 자체 심의를 통해 기획과제, 수탁과제, 위탁과제 등으로 선정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 의견제안 코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뉴스레터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에서는 뉴스레터를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우편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에서 가입신청 또는 ② Tel. 044-414-2265(연구행정총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의 기준과 관련법령 및 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각종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편 집**

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현지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 **발행인**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265(센터), <http://gafsc.kipf.re.kr>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선도합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Homepage <http://gafsc.kipf.re.kr>

2019년 6월 30일 발행

